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과 제안경위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5조²⁾ 및 「지방재정법」 제45조³⁾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조 1,605억 3,600만원보다 11.5%, 1조 2,881억 3,100만원이 증가한 12조 4,486억 6,800만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표 2-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현 황		재 원 구 분	
		증감액(A-B)	증 감 륜	일 반 재 원	목적지정재원
12,448,668	11,160,536	1,288,131	11.5	822,709	465,42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

- **세입예산**은 일반재원 8,227억 900만원을 증액하고, 목적지정재원 4,654억

-
- 1) ■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 내) 차이 있음
- 2)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3)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2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1조 2,881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2-2〉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C=A-B)	증 감 륜 (C / B)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우 선 확 정 추 경 편 성
합	계	12,448,668	11,160,536	1,288,131	11.5	822,709	459,254 6,168
이	전 수 입	11,199,686	10,633,737	565,948	5.3	100,527	459,254 6,168
	중앙정부이전수입	6,801,712	6,550,078	251,634	3.8	14,998	232,360 4,276
	자치단체이전수입	4,380,852	4,072,172	308,679	7.6	85,106	222,022 1,551
	기 타 이 전 수 입	17,121	11,486	5,634	49.1	421	4,872 341
자	체 수 입	144,320	134,517	9,803	7.3	9,803	- -
기	타	774,661	62,281	712,380	1,143.8	712,380	- -
	전 년 도 이 월 금	764,529	61,451	703,078	1,144.1	703,078	- -
	금 융 자 산 회 수	10,132	830	9,302	1,120.7	9,302	- -
내	부 거 래	330,000	330,000	-	-	-	- -
	기 금 전 입 금	330,000	330,000	-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4933 ('24. 5.24)

- **일반재원**의 경우, ①'2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통지('24. 2.27) 등⁴⁾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중 보통교부금 149억 9,800만원, ②'23년도 서울특별시 법정이전수입 정산분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851억 600만원, ③민간이전 및 자치단체간이전 수입인 **기타이전수입** 4억 2,100만원, ④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98억 300만원, ⑤'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7,123억 8,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1('24. 2.27),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256('24. 4.19),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통지”

8,227억 9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 **목적지정재원**의 경우, 회계연도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재원으로 ① 「지방재정법」 제45조⁵⁾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에⁶⁾ 따라 **우선확정**한 4,592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②**추경예산**에 6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654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⁷⁾

○ **세출예산**은 1조 2,881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 **인건비**는 ①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90억 2,300만원 증액, ②근로자(계약제교원, 계약제근로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35억 7,200만원 감액하여 총 54억 5,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하고⁸⁾
- **경상비**는 ①교육행정기관 운영비 2억 9,300만원 증액, ②학교운영비 △4억 6,000만원 감액하여 총 △1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하였으며,

5)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①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7) 목적지정재원(4,654억 2,200만원)은 ①「지방재정법」제45조 및 「예산총칙」제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의편성 전에 우선 사용하게 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우선확정분(4,592억 5,400만원)**과 ②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확정 후 집행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분(61억 6,800만원)**으로 구분함

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555

- **교육사업비**는 ①디벗 및 충전함 구매 등을 위한 원격교육지원 2,086억 5,000만원 증액, ②늘봄학교 운영지원 970억 7,400만원 증액, ③학교 급식기획운영 50억원 증액, ④교과용도서지원 49억 8,600만원 증액, ⑤재산관리일반운영비 43억 9,800만원 등 총 7,964억 7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⁹⁾
- **시설사업비**는 ①학교시설환경개선을 포함한 일반시설 1,885억 5,700만원, ②학교신증설 148억 9,900만원, ③급식시설 155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90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고,¹⁰⁾
- **재무활동**은 ①BTL상환 6억 9,400만원 순증, ②기금전출금 2,993억원을 순증하여 총 2,999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하며,¹¹⁾
- **예비비 및 기타**는 ①제지출금등 160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②내부유보금은 △486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6억 1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¹²⁾

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10)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10

1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8

1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546

〈표 2-3〉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재원구분		
			금액 (A)	구성비	금액 (B)	구성비	증감액 (C=A-B)	증감률 (C/B)	일재 반원	목적지정	
										우 확	선 정
합계			12,448,668	100	11,160,536	100	1,288,131	11.5	822,709	459,254	6,168
인건비	계		7,101,059	57.1	7,095,608	63.5	5,450	0.0	5,450	0	0
	공무원인건비		4,628,067	37.1	4,609,044	41.2	19,023	0.4	19,023	0	0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교직원		1,151,919	9.2	1,165,491	10.4	△13,572	△1.1	△13,572	0	0
	사립학교인건비		1,321,071	10.6	1,321,071	11.9	0	0.0	0	0	0
경상비	계		1,036,111	8.3	1,036,278	9.2	△166	0.0	△166	0	0
	교육행정기관 기관운영비		39,579	0.3	39,286	0.3	293	0.7	293	0	0
	학교 운영비	소계	996,531	8.0	996,991	8.9	△460	0.0	△460	0	0
		공립	745,649	5.9	745,649	6.6	0	0.0	0	0	0
		사립	250,882	2.0	251,342	2.2	△460	△0.1	△460	0	0
사업비	계		3,975,409	31.9	2,959,955	26.5	1,015,454	34.3	550,726	458,559	6,168
	교육사업비		2,879,286	23.1	2,082,878	18.6	796,407	38.2	362,121	428,452	5,834
	시설 사업비	소계	1,096,123	8.8	877,077	7.8	219,046	24.9	188,605	30,107	334
		학교 신증설	59,222	0.4	44,322	0.3	14,899	33.6	12,899	0	2,000
		일반시설	935,666	7.5	747,109	6.6	188,557	25.2	161,835	28,388	△1,665
		급식시설	101,234	0.8	85,645	0.7	15,589	18.2	13,870	1,719	0
재무 활동	계		300,046	2.4	52	0.0	299,994	5769131	299,300	694	0
	지방채상환등		52	0.0	52	0.0	0	0.0	0	0	0
	B T L 상 환		694	0.0	0	0.0	694	순증	0	694	0
	기금전출금		299,300	2.4	0	0.0	299,300	순증	299,300	0	0
예비비 및 기타			36,041	0.2	68,642	0.6	△32,601	△47.4	△32,601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4933 ('24. 5.24)

Ⅲ. 세입예산 관련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³⁾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¹⁴⁾ 및 특별 회계전입금¹⁵⁾으로 구성됨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예산(6조 5,500억 7,800만원) 보다 3.8%, 2,516억 3,400만원을 증액한 6조 8,017억 1,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경정 요청한 것임

〈표 3-1〉 중앙정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재 원 구 분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재 원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6,801,712	6,550,078	251,634	3.8	14,999	232,360	4,2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27,622	6,079,561	248,061	4.1	14,999	228,786	4,276
보통교부금	5,918,436	5,903,438	14,998	0.3	14,999	0	0
특별교부금	233,062	0	233,062	순증	0	228,786	4,276
증액교부금	176,123	176,123	0	0.0	0	0	0
국고보조금	23,369	19,796	3,573	18.1	0	3,573	0
특별회계전입금	450,720	450,720	0	0.0	0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②, ③ 생략)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14)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15) 특별회계전입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 및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⁶⁾에 따라 교육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5조 9,034억 3,800만원) 보다 0.3%, 149억 9,800만원 증액된 5조 9,184억 3,600만원으로 조정요청한 것으로

〈표 3-2〉 보통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5,918,436	5,903,438	14,998	0.3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5

- '24년 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¹⁷⁾에 근거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통지에 따라 증액분 106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 정부의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¹⁸⁾ 43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256('24. 4.19),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교부통지”

〈표 3-3〉 보통교부금 증액분 세부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측정항목		202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A)	2024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B)	증 감 내역		
					증 감 액 (C=A-B)	증 감 률 (C / B)	
보통교부금 ① - ② + ③			5,914,069	5,903,438	10,631	0.1	
기준재정수요 ①	합 계		10,378,576	10,369,053	9,523	0.0	
	교직원인건비		6,547,446	6,448,738	98,708	1.5	
	학교운영비		2,107,943	2,108,775	△832	△0.0	
	교육행정비		102,849	102,849	-	-	
	교육복지지원비		337,521	328,046	9,475	2.8	
	교육기관 등 시설비		729,112	943,030	△213,918	△22.6	
	유아교육비		115,488	113,409	2,079	1.83	
	방과후학교사업비		203,181	91,236	111,945	122.7	
	고교무상교육지원		192,634	191,568	1,066	0.5	
	재정결함보전		30,755	30,755	-	-	
	자체노력수요	소 계		11,647	10,647	1,000	9.3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20,000	20,000	-	-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5,647	5,647	-	-
		재정 집행 효율화 지원 (이월률 및 불용률)		△15,000	△15,000	-	-
		재정 집행 효율화 지원 (순세계잉여금예산편성 비율)		1,000	-	1,000	순증
기준재정수입 ②	합 계		4,464,507	4,465,615	△1,108	△0.0	
	법정전입금	소 계	4,268,094	4,270,269	△2,175	△0.0	
		지방교육세	1,788,786	1,788,786	-	-	
		시·도세	2,024,202	2,024,202	-	-	
		담배소비세	272,529	272,529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15,070	116,861	△1,791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장년분)	6,960	6,960	-	-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	35,981	36,209	△228	△0.6	
		국가사업의시도이행사업보전분	24,566	24,722	△156	△0.6	
	학교용지부담금		3,778	3,778	-	-	
	고교무상교육증액교부금		176,123	176,123	-	-	
	고교무상교육전입금		16,512	15,445	1,067	6.9	
정정교부액 등 ③			-	-	-	-	

(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9)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재해대책에 대해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바,

〈표 3-4〉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 감 률
233,062	0	233,062	100.0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6

- 특별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2,330억 6,2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20)에 따른 우선확정분(2,287억 8,600만원)과 추경편성분(42억 7,600만원)으로 확인됨
- **우선확정분**(2,287억 8,600만원)²¹⁾은 ①디지털기반구축(114억 6,400만원) 등을 포함한 **국가시책사업** 1,097억 2,400만원,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20)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21

②에코스쿨 조성(40억원) 등을 포함한 지역교육현안 316억 9,300만원, ③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312억 8,000만원)을 포함한 디지털교육혁신 873억 6,900만원으로 총 155건에 대한 우선확정분을 반영한 것이며

- **추경편성분**(42억 7,600만원)²²⁾은 학교폭력제로센터운영(39억 9,000만원) 등 4건, 42억 7,6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우 선 확 정 분	추 경 편 성 분
건	수	159	155	4
금	액	233,062	228,786	4,276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4

2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6

(3)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197억 9,600만원) 보다 18.1%, 35억 7,300만원이 증액된 233억 6,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6〉 국고보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3,369	19,796	3,573	18.1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45

-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우선확정분으로 ①발명교실운영(1억 6,900만원)²³⁾, ②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4,800만원)²⁴⁾, ③그린스마트스쿨(33억 5,500만원)²⁵⁾ 3건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2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92

2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572

2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979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요청액은 기정예산액(4조 721억 7,200만원) 보다 7.6%, 3,086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으로 법정이전수입은 851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2,235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자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표 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일반재원	목 적 지 정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4,380,852	4,072,172	308,679	7.6	85,106	222,021	1,551
법 정 이 전 수 입	4,117,565	4,032,458	85,106	2.1	85,106	-	-
지방교육세전입금	1,808,656	1,811,356	△2,699	△0.1	△2,699	-	-
담배소비세전입금	263,847	257,277	6,570	2.5	6,570	-	-
시 도 세 전 입 금	1,901,000	1,817,974	83,026	4.5	83,026	-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987	1,987	-	-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5,070	116,861	△1,790	△1.5	△1,790	-	-
교육급여보조금	10,491	10,491	-	-	-	-	-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11	16,511	-	-	-	-	-
비 법 정 이 전 수 입	263,287	39,714	223,572	562.9	-	222,021	1,551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49,307	15,914	133,392	838.2	-	133,136	256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13,980	23,800	90,180	378.9	-	88,884	1,295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3 생략)

(1) 법정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4조 324억 5,800만원) 보다 2.1%, 851억 600만원을 증액한 4조 1,175억 6,5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서울시의 '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분** 872억 8,100만원²⁷⁾을 증액편성하고,
 -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통지에 따라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7억 9,000만원²⁸⁾, ③**국가의 지방이양 사업 보전분** △1억 5,600만원²⁹⁾, ④**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 △2억 2,800만원³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27)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6310('24. 5. 1),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정) 자료 송부”
(단위 : 백만원)

세목구분		본예산 편성액	법정전출금 추경편성(예정)액		
			전출대상액(A)	당해연도전출액(B)	정산금(A-B)
법정 전출금	보통세(10%)	1,757,043	1,741,775	1,658,365	83,410
	담배소비세(45%)	257,277	259,474	252,904	6,570
	지방교육세(100%)	1,811,356	1,718,030	1,720,730	△2,699
	합계	3,825,676	3,719,280	3,631,999	87,281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편성액(A)	확정통지액(B) ^{주1}	차액(B-A)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6,861	115,070	△1,790

-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1 ('24. 2.27),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29) 「지방세법 시행령」 (제34528호) [별표5] 각 사·도교육청의 안분액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편성액(A)	'24년도 안분액(B) ^{주1}	차액(B-A)
국가의지방이양 사업 보전분	24,722	24,566	△156

-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1 ('24. 2.27),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30) 균특회계시도전환사업보전분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편성액(A)	확정통지액(B) ^{주1}	차액(B-A)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분	36,209	35,981	△228

- 주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51 ('24. 2.27), “2024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2) 비법정이전수입

-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³¹⁾ 및 「서울특별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³²⁾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전입금으로 기정예산(397억 1,400만원) 보다 2,235억 7,200만원 증액된 2,632억 8,700만원을 편성요청 한 바, ①우선확정분 2,220억 2,100만원과 ②추경예산분 15억 5,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과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159억 1,400만원) 보다 1,333억 9,200만원을 증액한 1,493억 700만원으로 편성 요청한 것임
 - 무상급식(1,307억 5,700만원), 특별교육경비보조금(15억 9,000만원), 공공도서관운영비지원(7억 8,900만원) 총 3건은 우선확정하고, 추경예산안을 통해 1,331억 3,6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급식비(2억 1,200만원), 지방이양사무지원(4,300만원) 총 2건은 추가경정예산에 2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기정예산(238억원) 보다 901억 8,000만원 증액한 1,139억 8,0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으로,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3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상급식(881억 8,200만원), BTL원금·이자(6억 9,400만원), 성인 문해교육지원사업(800만원) 총 3건은 우선확정하여 888억 8,400만원을 추경예산안을 통해 편성하고
- 영어원어민인건비및제경비(12억 1,000만원)³³⁾,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급식비(8,500만원)³⁴⁾ 총 2건은 추경예산에 1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3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99

3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584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 편성액은 17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114억 8,600만원) 보다 49.1%, 56억 3,4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바,

〈표 3-8〉 기타이전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 = A - B)	증감률 (C / B)
합계	17,121	11,486	5,634	49.1
민간이전수입	12,256	11,486	769	6.7
기타지원금	8,360	8,012	348	4.4
기타협력사업비	3,895	3,474	420	12.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864	0	4,864	순증
전입금	4,864	0	4,864	순증

- **민간이전수입**은 ①고덕초³⁵⁾ 임시(모듈러)교사 설치(20억원)³⁶⁾, ②디지털문해교육(1,400만원)³⁷⁾, ③농협금고약정사업비(4억 2,000만원)는 증액하고, ④도신초³⁸⁾ 기부채납금(△16억 6,600만원)³⁹⁾은 감액하여 기정예산(114억 8,600만원) 보다 7억 6,900만원 증액하여 122억 5,600만원으로 편성요청한 것이며

35)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2길 42(고덕동)

3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4, p.849
고덕초 임시(모듈러)교사 설치 예산편성 내역

구분	세입	세출
금액	20억원	20억원
내용	- 고덕초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의 학교 증축(모듈러교사) 비용 기부채납	- [운영비] 모듈러 임차료 16억 2,700만원 - [건설비] 모듈러 설계비 3,000만원 - [건설비] 시설비 3억 4,200만원

37)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590

38)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3길 32-9(대림동)

39)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4
도신초 기부채납금 감액사유: 개축 사업 지연에 따른 기부채납금 납부시기 연기(2025년 납부 예정)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①'24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47억 3,900만원)⁴⁰⁾와 해당 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는 ②유초연계이음학기(9,200만원)⁴¹⁾, ③초등교장 자격연수(2,000만원)⁴²⁾, ④지방공무원연수운영(700만원)⁴³⁾, ⑤교감자격연수(400만원)⁴⁴⁾ 총 5건에 대하여 48억 6,400만원을 순증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40) ■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46457('23.12.28),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입금 요청”

41)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49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3455('24. 4. 4), “2024년 유·초 이음교육 운영지원-현장컨설팅단 및 교원 역량강화 위탁사업 협약 관련 분담금 납부 요청”

42)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65
■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7739('24. 4.23), “(서울)2024 초등 교장 자격연수 교육부 지명 대상자 연수비 납부 안내”

43)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67

44)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64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1232('24. 4.18), “2024 초등 교감 자격연수 교육부 소속 연수대상자 연수 경비 납부 예정 안내”

4.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1,345억 1,700만원) 보다 7.3%, 98억 300만원이 증액된 1,443억 2,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①무상교육 제외대상 유아의 입학금 및 수업료(50만원) 수입과 ②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문화교실 강좌 수강료(2,200만원) 수입 증액분 2,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며,
 - **자산수입**은 ①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토지매각수입(46억 2,100만원)⁴⁵⁾, ②무형자산매각(1,900만원)⁴⁶⁾, ③기타유형자산매각(360만원)⁴⁷⁾, ④기계장치매각(185만원)⁴⁸⁾으로 46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 **기타수입**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 10억원과 그외수입 △65억 2,700만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55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하는 것임

45) 토지매각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내용
합계	4,621	-
동작관악	4,487	- 노량진 재개발사업 관련 구역 토지매각
중부	134	- 한강맨션아파트 재건축구역: 1억 2,700만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700만원

46) 무형자산매각: 전신전화 보증금회수(1,300,000원×15교=19,500,000원)

47) 기타유형자산매각: 전기통신기기(810,000원), 사무기기및집기(2,791,000원) 매각

48) 기계장치매각: 기계장치매각(1,850,000원)

〈표 3-9〉 자체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액 (A)	기 정 예 산 액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륜 (C / B)
합	계	144,320	134,517	9,803	7.3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1,544	1,520	23	1.5
행 정 활 동 수 입		5,597	5,597	0.06	0.0
자 산 수 입		13,522	8,875	4,646	52.4
이 자 수 입		22,480	11,819	10,660	90.2
기 타 수 입		101,176	106,704	△5,527	△5.2

-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146억 5,000만원) 보다 △44.6%, △65억 2,700만원 감액한 81억 2,2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바,

〈표 3-10〉 기타수입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액 (A)	기 정 예 산 액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륜 (C / B)
합	계	99,955	105,483	△5,527	△5.2
그 외 수 입		8,122	14,650	△6,527	△44.6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69,098	69,098	-	-
보 조 금 등 반 납 금 수 입		22,734	21,734	1,000	4.6%

- '24년도 본예산 편성시 5개년 자료를 추계하여 146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23년도에 한정하여 그외수입에 반영한 특수요인까지 '24년도 본예산에 여과없이 반영한 편성오류를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감액요청된 세입내역은 ①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이관 △28억 6,400만원⁴⁹⁾, ②교육감 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 △16억 6,300만원⁵⁰⁾, ③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복지회관 건립 관련 반납금 징수 △20억원⁵¹⁾으로 '23년도에만 발생한 특이사항으로 이미 '23년도에 세입조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세입예산중 동일사안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처리 불가한 65억 2,7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
- 더욱이 세입예산의 사업별 설명자료⁵²⁾에는 “2023년 세출 금액(집행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수입 등의 감소 예상 및 감소분 반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하고 있어 사업별 설명자료는 실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임
- 교육재정의 한정성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임에도 이미 '23년도에 세입조치 완료된 내용을 '24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에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오류를 치유하려는 것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나, 회계연도중에는 추경안 이외에 편성오류를 경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 감액요청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경정요청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9)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6538('23. 4. 3),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조치 요청”

5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728('23. 1.11), “교육감 선거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결의”

5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4745('23. 3. 3),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복지회관 건립 보조금 반납 징수결의”

5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7

5. 기타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및 금융자산회수로 구성되는 바, 기정예산(622억 8,100만원) 보다 7,123억 8,000만원이 증액된 7,746억 6,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1〉 기타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 = A - B)	증감률 (C / B)
합	계	774,661	62,281	712,380	1,143.8
전	년 도 이 월 금	764,529	61,451	703,078	1,144.1
	순 세 계 잉 여 금	763,206	61,451	701,755	1,142.0
	보 조 금 사 용 잔 액	1,322	0	1,322	순증
금	용 자 산 회 수	10,132	830	9,302	1,120.7
	용 자 금 원 금 회 수	9,252	0	9,252	순증
	보 증 금 회 수	880	830	50	6.0

- **전년도 이월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017억 5,5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3억 2,200만원으로 총 7,030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7,632억 600만원 발생되었으나 '24년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614억 5,100만원을 미리 편성한 바,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7,017억 5,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사용잔액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7,500만원)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12억 4,700만원) 총 13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금융자산회수**는 ①**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 92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에 순증편성 요청하고,⁵³⁾ ②**장기임차보증금회수**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⁵⁴⁾

- ②**장기임차보증금회수**(5,000만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 노동조합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의 사무소 이전에 따라 회수되는 보증금을 세입예산에 이입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①**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의 경우,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액 확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세부 세입과목은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

- 공무원대여학자금은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연금법」 제75조⁵⁵⁾에 따라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에 소요되는 경비(원금과 운영경비)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하고, 차후에 해당 공무원이 학자금대여금을 상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회수하는 것이며 대여학자금 회수액이 학자금대여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됨

5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4

5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5

55)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따라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한 학자금 원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회수액이 학자금대여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공단이 서울시교육청으로 부담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과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은 동일한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대여학자금 부담금과 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을 혼용하고 있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세입조치하려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됨

IV. 세출예산 관련 검토

1. 세출예산 증액 관련

(1) 일반재원 증액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재원 증액 편성액은 9,186억 9,7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증액분(1조 3,857억 8,500만)의 66.3%에 해당됨

〈표 4-1A〉 일반재원 주요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추경증액
안전총괄담당관	학생안전관리	안전인프라구축	1,769
예산담당관	예산관리	교특예산편성	2,038
	제지출금등	반환금	16,041
	교원인건비	명예퇴직수당	5,000
	교원인건비	보수	13,923
	계약제교원인건비	맞춤형복지비	1,094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ICT활용교육지원	원격교육지원	208,650
	교과서지원	교과용도서지원	4,986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지원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3,257
초등교육과	교원인사관리	교육활동보호지원	931
	방과후학교운영	늘봄학교운영지원	97,074
	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522

〈표 4-1B〉 일반재원 주요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추 경 증 액
중 등 교 육 과	특색교육과정운영	고 교 학 점 제 도 입 운 영 지 원	1,072
	특색교육과정운영	고 교 학 점 제 인 프 라 구 축 지 원	550
	특색교육과정운영	학 교 간 공 동 교 육 과 정 운 영 활 성 화	750
	학 력 평 가 관 리	수 능 모 의 평 가 지 원	4,293
교수학습·기초 학 력 지 원 과	교육과정운영지원	E B S 수 능 강 의 운 영 지 원	1,500
	교육과정운영지원	영 어 원 어 민 인 건 비 및 제 경 비	1,234
	학 력 향 상 지 원	교 육 회 복 지 원	1,440
	학 력 향 상 지 원	기 초 학 력 향 상 지 원	2,000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대 안 교 육 운 영	대 안 교 육 기 관 지 원	1,112
진 로 직 업 교 육 과	직 업 교 육 운 영	직업계고실험실습생및교사건강관리	1,557
	취 업 역 량 강 화	고 졸 취 업 지 원 확 대	2,097
	직업교육환경개선	직 업 계 고 매 력 도 제 고	696
	직업교육환경개선	직 업 계 고 재 구 조 화 지 원	1,807
	직업교육환경개선	직 업 교 육 선 도 모 델 운 영	4,822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초 등 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915
	각 종 체 육 활 동	선 진 운 동 부 육 성	940
	학 교 급 식 운 영	학 교 급 식 기 획 운 영	5,000
특 수 교 육 과	특 수 교 육 운 영	방 과 후 활 동 지 원	2,540

〈표 4-1C〉 일반재원 주요 증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추 경 증 액
학 교 지 원 과	학 교 신 증 설	교 실 증 축	4,984
	학 교 신 증 설	학 교 신 설	9,915
	적정규모학교운영	적 정 규 모 학 교 육 성 지 원 금	590
	기관시설유지관리	직 속 기 관 신 증 설	600
교 육 재 정 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재 산 관 리 일 반 운 영 비	4,398
	공유재산및물품관리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1,385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시 설 확 충	기 타 증 축	6,951
	학교시설환경개선	노 후 시 설 개 선	181,341
	기관시설유지관리	평 생 교 육 기 관 환 경 개 선	1,388
	기 금 전 출 금	교 육 시 설 환 경 개 선 기 금	299,300
미래학교추진단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노 후 교 사 개 축	732
교육연구정보원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원 격 수 업 지 원 플 랫 폼 구 축	3,200
보 건 안 전 진 흥 원	학교환경위생관리	학 교 환 경 안 전 관 리 기 준 검 사	2,496
	학교급식환경개선	신 규 학 교 조 리 기 구 구 입	1,070

※ 세출예산 증액편성액 5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① 경상비

□ 기관기본운영비

-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96)
- **본청부서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99)
- **평생교육기관기본운영비** (사업별 설명자료, p.102)

- 예산담당담당관 소관 **교육지원기관기본운영비, 본청부서운영비,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는 총 1억 3,900만원을 증액요청 한 것으로, '24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⁵⁶⁾ 본청, 직속기관의 조직개편과 정원증가에 따라 필요한 직무수행경비, 부서운영비 등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 기관기본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소요예산	세 부 내 역
합 계	139	
교육지원기관 기 본 운 영 비	65	· 유아교육진흥원 : 0원(사회복무요원보수 등 감액 → 유인경비용역비 증액) · 보건안전진흥원 : 2,100천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 : 4급 총무부장) · 교육연수원 : 63,619천원(노후 기계설비 보수 및 교체)
본 청 부 서 운 영 비	35	· 예산담당관 : 900천원 · 행정관리담당관 : 1,080천원 · 유아교육과 : 18,648천원 · 초등교육과 14,472천원
평생교육기관 기 본 운 영 비	39	·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 30,325천원(공사업체 사용 공공요금, 개관준비 운영비) · 마포평생학습관, 구로도봉어린이정독도서관 : 0원(예산 세목간 조정)

56)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95)

- 제안일 : '24. 4. 3 - 의결일 : '24. 5. 3

- 제안요지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96)

- 제안일 : '24. 4. 3 - 의결일 : '24. 5. 3

- 제안요지 : 증가하는 행정 수요(산업안전·보건·환경·급식 등)에 효율적 부응 및 통솔범위 적정화를 위해 보건안전진흥원 (가칭)총무부를 신설함에 따라 단위 기관 내 직급 조정

② 교육사업비

□ 기록물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47)

- 총무과 소관 **기록물관리**는 **보존서고확장**을 위해 기정예산(12억 2,200만원) 대비 4.1%, 5,000만원이 증액된 12억 7,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 기록물관리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1,222	50	1,272	1,170
	기 록 물 공 개 재 분 류	120	-	120	120
	기 록 물 관 리 운 영	58	-	58	59
	기 록 물 폐 기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6	-	6	6
	보 존 서 고 확 장	134	50	184	-
	중 요 기 록 물 전 자 화 (D B 구 축) 작 업	903	-	903	983

- **보존서고확장**은 서울시교육청 본청 보존서고 공간부족에 따라 (구)화양초⁵⁷⁾에 서고공간을 확보하여 본청 및 폐지학교의 중요기록물을 이관·재배치하는 사업으로, '24년도 본예산으로 1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보존공간내 기록물 최대 수용을 위해 이동식 서가를 추가구매하고자 5,000만원⁵⁸⁾을 증액 요청한 것임
- 서울시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⁵⁹⁾에 따르면 (구)화양초 이전적지에는 '26년 12월, (가칭)화양미래교육문화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24년도

57) (성동광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화양동 12-2) : '23. 3월 폐교

58) 이동식서가 복식형 62대(4연 6단/6연 6단, 45,300천원), 바닥판 147개(4,700천원)

5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16656('23.10.10),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안(업무보고) 제출”

-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

예산으로 구축하는 서고는 이전적지 활용시까지 1년 남짓 사용가능한 임시 서고일 수밖에 없는 바,

- 서울시교육청의 신청사 이전은 '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 신청사⁶⁰⁾ 스마트오피스 환경 운영 방침에 따라 현 청사 내 보관중인 기록물 이관이 시급하여 (구)화양초에 임시서고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이미 포화상태인 기록관 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점차 증가하는 폐교 및 휴교 학교의 중요기록물 보관을 위해서는 임시서고 확충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 설립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교육청의 기록관 공간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18년도에는 각급 학교에 산재된 중요기록물 보관을 위한 (가칭)교육 기록정보센터 건립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⁶¹⁾
- '19년 7월, 자체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⁶²⁾ 및 '19년 12월, 관련 지자체(도봉구청)와의 협의결렬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어⁶³⁾ 중요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0) (현청사) 서고 280㎡(4.1실), 각 부서별 캐비닛 및 보관장소에 비전자기록물 보관

→ (신청사) 서고 275㎡(4실), 종이없는 사무실 ‘스마트오피스’ 환경 조성에 따라 캐비닛 및 보관장소 최소

61)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34922('18.10. 1), “(가칭)교육기록정보센터 건립 추진계획”

62)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383('19. 7.23), “2019년 제4회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

- 사업명 : 교육정보기록원(종합정보센터) 건립

- 사업개요 : 도봉구 도봉동 62-105, 연면적 12,661.6㎡, 총사업비 427억원[용지비 포함시 703억원]

- 심사결과 : “재검토”(타당성 조사 실시 후 추진)

6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37~139
40. 정보화기획, I. 예산 총괄, 1. 사업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2019년도
	기정예산(A)	추경증감(B)	추경예산(A+B)	최종예산
종합정보센터신축타당성조사	68,600	△68,600	-	6,000

3. 추경사유

○ 종합정보센터 건립 부지 재검토로 타당성 조사 사업 미시행(감추경)

- 종합정보센터 건립 재정투자심사 결과 회신 : “재검토”

- 도봉구청과의 사업추진 협의 결렬 : 사업주체, 소유권, 재원 등에서 의견 불일치

- 학교 이전적지 및 유휴부지 재검토 예정

□ 학생안전관리

- **안전인프라구축** (사업별 설명자료, p.55)
- **학생안전인프라강화(특별교부금)** (사업별 설명자료, p.63)

○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안전인프라구축**은 기정예산(42억 8,300만원) 대비 41.3%, 17억 6,900만원 증액된 60억 5,300만원을 편성요청한 바, ① 재난관리자원비축관리 8,000만원, ②학교CCTV설치지원 16억 8,9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이고,

- **학생안전인프라강화(특별교부금)**는 '24년 1월 교부되어 성립전 우선확정한 ③안전사고예방관리 특별교부금 6억 3,300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임

〈표 4-4〉 안전인프라구축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283	1,769	6,053	1,681
	교 육 안 전 위 원 회 운 영	6	-	6	8
	안 전 정 책 조 정 회 의 등	1	-	1	3
	안전체험관건립및운영지원	1,536	-	1,536	24
	협 력 체 계 구 축	10	-	10	19
	유치원어린이통학버스안전지원	30	-	30	100
	①재난관리자원비축관리	179	80	260	-
	재난대응시스템구축및훈련	53	-	53	63
	초등학교교통안전지도활성화	137	-	137	212
	통학버스관리시스템운영지원	22	-	22	22
	② 학교 CCTV 설치지원	2,291	1,689	3,980	1,200
	학 교 안 전 평 가 단 운 영	9	-	9	10
	학교주변통학로안전강화	4	-	4	15
	초등학생등학교안심알림	-	-	-	3

〈표 4-5〉 학생안전인프라강화(특별교부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	633	633	178
	③ 안전 사고 예방 관리	-	633	633	178

- ②학교CCTV설치지원과 ③안전사고예방관리는 지능정보활용을 통한 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 바, '23년도 제3차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10억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재원 15억원을 투입하여 총 25개의 시범운영학교에 교당 1억원의 목적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임
- 동 사업재원중 특별교부금 10억원은 교육부에서 '23년 11월,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이나, 10억원중 1억 7,800만원을 우선 교부하고 잔여금 8억 2,200만원은 '24년 1월중 분할 교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으나,⁶⁴⁾ '23년 12월, 수정 통지를 통해⁶⁵⁾ 잔여금(8억 2,200만원)중 1억 8,900만원을 추가 교부하고 '23년 12월 19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송금한 바,⁶⁶⁾
- 「지방재정법」⁶⁷⁾ 및 예산총칙⁶⁸⁾에 따라 '23회계연도중 성립전예산으로

6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098('23.11. 3), “2023년도 제3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서울)”

6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962('23.12.15), “2023년도 제3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수정통지(서울)”

6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996('23.12.19), “2023년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차 송금 안내(서울)”

67)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6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교육청이 '23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종료를 위해 성립전 우선사용 확정을 '23년 12월 11일 마감한 바 있어,⁶⁹⁾ '23회계연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6〉 지능형 CCTV 설치·운영 예산편성 현황(2024~2023)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금회 성요청)	2023년도 (성립전 간주처리)	세 부 내 역
합 계 (2 5 억 원)		2,322	178	
	학 교 C C T V 설 치 지 원	1,689	-	(‘23년 특교 미반영분) 189,000천원 (‘24년 일반재원) 1,500,000천원
	학 생 안 전 인 프 라 강 화 (특 별 교 부 금)	633	178	(‘23년 특교 반영분) 178,000천원 (‘24년 특교 분할교부) 633,000천원

□ **교특예산편성** (사업별 설명자료, p.107)

- 예산담당관 소관 **교특예산편성**은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편성업무지원 5,500만원,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20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20억 8,2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7〉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A-B)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합 계	2,411	4,228	△3,900	328	2,082
역 량 강 화 연 수	51	51	-	51	-
예 산 편 성 업 무 지 원	328	272	-	272	55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5	5	-	5	-
학 교 자 율 운 영 체 제 지 원	2,026	3,900	△3,900	-	2,026

69)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702('23.12. 4), “2023년 성립전 우선사용 신청 마감 안내”

○ 사업내용중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은 '24년도 본예산 심사시(39억원) 전액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0억 2,600만원을 순증편성 요청한 것인 바,

-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등 14개의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⁷⁰⁾중 학교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전출금 등 20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초·중·고·특수학교 및 공립 각종학교 1,351교에 예산을 전출하여 '24년 7월부터 '24년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표 4-8〉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소요예산	산 출 내 역
학교자율운영체제지원	2,026	○ 전출금등 - (국립) 1,500천원×10교 = 15,000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 (공립) 1,500천원×975교 = 1,462,500천원 - (사립) 1,500천원×366교 = 549,000천원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108~109

○ 다만, 동 소요예산은 단축된 사업기간을 반영한 최소한의 사업비 지원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청한 것이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히 편성하여 추진할 만큼 정책환경의 변화나 사정변경 등이 있는 시급한 사안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70)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355('24. 1.10) 「2024 학교자율 사업운영제 기본계획(안)」

○ 사업운영 개요

사업명	재원	사업명	재원
교육과정자율운영영역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운영비)	학교학부모회운영지원	학교기본운영비 (통합교부운영비)
교원학습공동체		중학교로찾아가는 직업계고 진로진학설명회 운영	
학생자치참여예산제		선택사업 자율운영영역	목적사업비

- 아울러 편성요청된 소요재원은 '24년도 본예산 의결시 전액 삭감된 예산임에도 해당연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편성 요청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소요예산의 편성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원격교육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256)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소관 **원격교육지원**은 스마트 기기 활용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①**디지털환경조성 사업** 2,079억 5,1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공교육에 적합한 에듀테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②**에듀테크소프트웨어 사업** 6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①**디지털환경조성 사업**중 디벗 스마트기기는 '24학년도 중1, 고1, 고등학교 교원과 '25학년도 초3·4, 초등학교 교원, 고1을 대상으로 3,194억 8,1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스마트기기 양품화는 112억 5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며, 전자철판(중3, 고1, 특수학교 대상)은 415억 9,8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나,
- 초3·4,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와 충전함 보급은 △1,279억 6,700만원이 삭감되고, 스마트기기 양품화는 △112억 500만원 전액, 전자철판은 고1 소요분 △30억 5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음

〈표 4-9〉 원격교육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 예산안 (A)	본 예산 의 결 내 역			증 감 액 (C=A-B)
		편 성 액 ①	증 감 액 ②	확 정 액 (B=①+②)	
합 계	440,105	373,631	△142,177	231,454	208,650
디 지 털 환 경 조 성	439,406	373,631	△142,177	231,454	207,951
에 듀 테 크 소 프 트 랩	699	-	-	-	699

○ '24년도 제1회 추경안중 디지털환경조성은 ㉠교원·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디벗」 구입, ㉡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스마트기기 양품화, ㉣전자칠판 설치를 위해 2,079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 '25학년도에 초3·4 및 초등 교원에게 ㉠스마트기기 「디벗」 과 ㉡스마트기기 충전함을 보급하고자 1,273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22학년도에 보급된 스마트기기 74,701대를 양품화하여 '25학년도 중1 학생에게 재배부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양품화비 76억 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국·공·사립학교 초3·4, 고1·2 및 디지털 선도학교 8,116학급에 전자칠판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730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임

〈표 4-10〉 2024년도 디벗 스마트기기, 전자칠판 예산 편성(요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디벗 스마트기기 및 ㉡충전함 (보급대상)	㉢디벗 양품화 (보급대상)	㉣전자칠판 (보급대상)	계
합 계	320,165	7,603	111,637	439,405
본 예산	192,861 ('24학년도 중1, 고1, 고 교원, '25학년도 고1)	-	38,593 (중3, 특수)	231,454
1회 추경안	127,304 ('25학년도 초3·4, 초 교원)	7,603 ('25학년도 중1)	73,044 (초3·4, 고1·2, 디지털선도학교)	207,951

※ '24년도 (세세부)원격교육지원 중 '디지털환경조성' 사업으로 스마트기기 구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스마트기기, 충전함, 양품화, 디지털튜터 운영)과 전자칠판설치 사업 예산으로 한정함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71)에 따라 '25학년도 초등학교 3·4, 중1, 고1(공통·일반선택), '26학년도 초 5·6, 중2,

71)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578('23. 2.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수립 알림”

’27학년도 중3 등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확보하고, 스마트기기 보급과 연계하여 전자철판 보급을 추진할 계획으로⁷²⁾

- ’25학년도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인 초 3·4, 중1, 고1(공통·일반선택) 대상으로 ’25학년도 1학기 초까지 스마트기기와 전자철판 보급을 완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11〉 연차별 「디벗」 보급 및 활용 계획 (2027~2022)

구분	초				중			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22년					보급	-	-	-	-	-
2023년					보급	활용				
2024년	디지털 선도학교(53교, 특수1 별도)				디지털 선도학교(34교)			디지털 선도학교(31교)		
					보급	활용	활용	보급		
2025년	보급	보급			활용	활용	활용	보급	활용	
2026년	활용	활용	보급	보급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2027년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 학교급 확대 : ’22년 중1 → ’23년 중1 → ’24년 중1, 고1·2, 초3~6^(디지털 선도학교) → ’25년 초3·4, 고1 → ’26년 초5·6 순으로 신규 보급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739(’23. 5.27), ’24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재구성

72)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4831(’24. 3.15), “2024 AI·디지털 기반 교육 기본 계획”

〈표 4-12〉 연차별 전자칠판 설치 현황 및 계획(2026~2021)

(1차) 2021년	(2차) 2022년	(3차) 2023년	(4차 ~)		
			2024년	2025년	2026년
중1	-	중2	중3·특수	초3·4, 고1·2	초5·6, 고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766('24. 1.16), “2024년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기본 계획(안)” 재구성

- 다만, 스마트기기보급(디벗) 사업의 경우, '22년도에 353억 8,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3년도에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을 사유로 349억 4,500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규모 이월에 따른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계속되는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스마트기기보급(디벗)은 사업기간을 '24년 6월부터 '25년 5월까지, 전자칠판설치는 '24년 8월부터 '25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어⁷³⁾ 편성시점부터 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⁷⁴⁾이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판단됨

〈표 4-13〉 원격교육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2023~2022)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본 예산	추경예산	전 년 도 이월금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금액	불 용 액
2023	-	57,005	35,382	92,388	54,581	34,945	2,861
2022 ^{주1)}	54,970	△15,009	-	39,961	2,265	35,382	2,312

※ 주1) 증액 353억 8,200만원(임차방식 : 운영비 → 구매방식 : 유형자산)
감액 △503억 9,100만원(구매방식 : 학교회계전출금 → 임차방식 : 운영비)

73)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261, IV. 추진내용

2. 2024년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향후계획

- 2025학년도 고등학교(고1) 디벗 환경 구축 추진 : 2024. 6. ~ 2025. 5.
- 2024학년도 전자칠판 보급 지원 : 2024. 8. ~ 2025. 2.
- 2025학년도 디벗 스마트기기 양품화 및 재배부 : 2024. 7. ~ 2025. 4.
- 2025학년도 초등학교(초3·4) 디벗 환경 구축 추진 : 2024. 7. ~ 2025. 5.

74)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24년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에 편성(요청)한 디벗과 전자철관 구입 관련 예산이 4,394억 500만원이라는 점에서 회계연도내 실제 집행 가능한 조건인지 사업부서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연도중 집행 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에듀테크소프트랩은 국비·지방비(5:5) 매칭사업이며 금번 추경안에 6억 9,900만원을 신규 편성요청한 것으로

- 지난 '24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에듀테크소프트랩 신규 공모에 선정되어,⁷⁵⁾ 협력(컨소시엄) 운영기관인 건국대학교에 에듀테크소프트랩 공간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에듀테크소프트랩 총 사업비용은 국비 포함 13억 9,8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에듀테크 소프트랩 공간 구축 및 인프라 확보(11억원), 에듀테크 실증·연수 등 운영비와 인건비(2억 9,800만원)이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확인됨⁷⁶⁾

○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서울시교육청 분담금 6억 9,9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인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⁷⁷⁾로 편성되어 있으나,

75) ①교육부, 교육전환담당관-553('24. 2.26),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 사업 기본계획 안내”
 ②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글로벌에듀테크부-775('24. 3.28), “2024년 초·중등교육 에듀테크 소프트랩 선정평가 결과 통보”
 76)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5026('24. 5.29)
 77) 교육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8.) [별표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330 자치단체등이전			
330-05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330-06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교육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에는 자본형성적 경비의 경우,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에듀테크소프트랩 사업비용중 에듀테크 소프트랩 공간 구축 및 인프라 확보는 자본형성적 경비, 에듀테크 실증·연수 등 운영비와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할 사안으로 분담금 6억 9,900만원은 경비성질에 따른 적정 과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4〉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에듀테크소프트랩	699	○ 자치단체등이전 - 분담금 699,000천원×1식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108~109

□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393)

- 초등교육과 소관인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은 국비, 지방비(7:3) 매칭사업으로 아침·방학중·저녁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운영비를 지원하는 늘봄학교 돌봄운영다양화지원을 위해 '24년 3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36억 6,800만원을 우선확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에 대응한 자체재원도 5억 2,200만원 추가하여 41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5〉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 계	1,050	4,190	5,240	-
돌봄운영다양화지원	1,050	522	1,572	-
돌봄운영다양화지원 (특별교부금)	-	3,668	3,668	-

- 사업내용중 **돌봄운영다양화지원**은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급·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소요예산은 저녁돌봄·방학돌봄·틈새돌봄 운영비 5억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저녁돌봄 참여 학생중 석·간식 희망자에게 석·간식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⁷⁸⁾

〈표 4-16〉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 정 예 산	추경증감액	편 성 내 역
돌 다 양 화 지 원	1,572	1,050	522	○ 학교회계전출금 (저녁돌봄 12,000,000원×100교+ 방학돌봄 1,000,000원×270교+ 틈새돌봄 1,000,000원×270교)×30%

※ 자료근거 : 초등교육과-7965('24. 4.25), “2024년 제2차 국가사책 및 제1차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 다만, 돌봄교실 간식비 무상지원의 경우, 지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상의 근거가 별도로 제·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⁷⁹⁾ '24년 6월 현재까지 법령상 근거를 정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교육부에서는 '23년 1월,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에서 시·도 교육청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을 명시하였고, '24년 2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24년 하반기 중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늘봄학교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동 소요예산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불비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간식비 무상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78)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2960('24. 2.23), “202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 지원 계획(안)”

79)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23. 4.10),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p.64~p.66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23.12.15),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p.101~p.103

□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396)

- 초등교육과 소관 **늘봄학교운영지원**은 '24학년도 2학기 서울형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①**늘봄학교 단기 행정인력지원** 111억 9,400만원과 ②**늘봄학교환경개선구축비** 858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17〉 늘봄학교운영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	97,074	97,074	-
①	늘 봄 학 교 단 기 행 정 인 력 지 원	-	11,194	11,194	-
②	늘 봄 학 교 환 경 개 선 구 축 비	-	85,880	85,880	-

〈표 4-18〉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증감액	편	성	내	역
합	계	97,074	-	97,074						
	늘	봄	학	교	11,194	-	11,194		○ 단기행정인력 인건비(국립) (97,120원×27일×6.3월×2교)×1.12=37,006천원 ○ 단기행정인력 인건비(공립) (97,120원×27일×6.3월×565교)×1.12=10,453,927천원 ○ 단기행정인력 인건비(사립) (97,120원×27일×6.3월×38교)×1.12=703,096천원	
	늘	봄	학	교	85,880	-	85,880		○ 교과연구실개선비(공립) 30,000천원×1실×565교=16,950,000천원 ○ 늘봄교실구축비(공립) 61,000천원×2실×565교=68,930,000천원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97~p.398

○ ①**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지원**은 '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실시에 따라 국·공·사립초 전체 605교에 '24년 하반기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늘봄실무사) 인건비 111억 9,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제출된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 지원 기간은 '24년 6월부터 '24년 12월까지로 확인됨에도⁸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24. 5.27) 이전인 '24년 5월 16일, 늘봄실무사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24년 6월 1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24년 6월 19일 근무기관을 확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⁸¹⁾
- 늘봄학교가 '24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시행예정에 있어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자 '24년 5~6월중 늘봄실무사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나,⁸²⁾ 추경 편성요청 사업을 의회 의결전 미리 추진한 것은 의회의 예산확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향후 유사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②**늘봄학교 환경개선구축비**는 '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립초 전체 565교⁸³⁾에 ㉠늘봄교실과 ㉡교사연구실을 조성하기 위해 858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80)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97, Ⅲ. 추경 증감내용

1. 늘봄학교단기행정인력지원

■ 기간 : 2024. 6. ~ 12.

81)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4808('24. 5.16), “늘봄실무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실시” 재구성

■ 공고일자 : '24. 5.16

■ 추진일정 : 접수기간 '24. 5.20 ~ 5.22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4. 6. 3

2차 면접 심사 일정 '24. 6. 8

최종 합격자 발표 '24. 6.11

근무기관 발표 '24. 6.19

82)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1905('24. 5.20), “'24년 늘봄실무사 채용·배치 가이드라인」 안내”

■ '24년 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집행

- (채용 절차) 교육청별 자체 절차기준에 따라 채용 가능하며, 2학기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6월까지의 배치 필요

83) '24학년도 1학기 우선시행 38교, 확대시행 112교, 2학기 신규 시행 415교 (총 565교)

- ㉔늘봄교실 구축비(6,100만원/1실)는 바닥난방 설치(3,000만원/1실)를 필수로 하며 희망학교의 경우, 꿈담교실 수준의 공간 조성(3,000만원/1실)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설계용역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㉕교사연구실 개선비(3,000만원/1실)는 일반교실을 늘봄교실 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학년연구실 공간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에 학년연구실 조성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임⁸⁴⁾
- ㉔늘봄학교 환경개선구축비는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㉔늘봄교실 및 ㉕학년연구실 공간조성 비용을 학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요청된 소요재원은 별도 수요조사 없이 공립초 전체 565교에 늘봄교실 2실과 교사연구실 1실을 조성하는 비용을 우선 편성요청한 것으로
- '24년 6월 현재, 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운영 및 시설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어⁸⁵⁾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8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5349('24. 5. 9), “서울형 늘봄학교 공간조성사업 지원계획(안)”

■ 사업비 기준단가

늘봄교실	60,000천원/실	필수	바닥난방 설치	30,000천원/실
		선택	꿈담교실 수준 공간조성	30,000천원/실
학년연구실	학년연구실 공간 조성(필요시) 30,000천원/교			

※ 공사·물품 등 공간조성 관련 사업비 전체 포함. 별도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설계비 추가배정 가능

주1) 늘봄교실 1실 단가 60,000천원은 꿈을 담은 교실 사업비 단가 69,000천원에서 용역비(설계, 퍼실리테이터, 디자인감리 등) 9,000천원을 제외한 비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주2) 꿈을 담은 교실 사업비 단가: 교실 1실(67㎡)당 69,000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896('24. 3.13), “2024년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대상학교 선정 안내”]

85)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9327('24. 5.17), “2024년 2학기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수요조사 계획(안) 및 실시 안내”

- 대상: 2학기 신규시행 공립초 415교, - 수요조사 기간: '24. 5.17 ~ 5.31 (제출기한: '24. 6. 4)

②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9994('24. 5.28),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시설 수요조사 계획(안) 및 시행 안내”

- 대상: 1학기 시행 공립초 150교, - 수요조사 기간: '24. 5.28 ~ 6. 7 (제출기한: '24. 6.10)

□ **고교학점제도입운영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462)

- 중등교육과 소관 **고교학점제도입운영지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25년)에 따라 현장 중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6억 3,0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자체재원 10억 7,200만원을 추가하여 17억 3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4-19〉 고교학점제도입운영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	계	1,494	1,703	3,197	4,763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1,414	1,000	2,414	4,020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	158	158	289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	30	30	30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 (특별교부금)	-	55	55	185
	고교학점제현장안착지원 (특별교부금)	-	89	89	24
	시도교육청고교학점제 도입기반마련	79	-	79	115
	시도교육청고교학점제 도입기반마련(특별교부금)	-	328	328	100
	온라인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	42	42	-

- 사업내용중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운영**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학교 소규모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홈페이지, 강의(학습)실, 학생 카페, 복도 휴식공간 조성, 기자재 구축 등 시설환경 구축과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을 편성한 것이나,

-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대상 학교 40교에 대한 추계 및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희망학교를 선정할 것으로 검토되는 바, 구체적인 계획없이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요청한 사례에 편성요청된 소요예산을 승인하는 것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0〉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경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고 교 학 점 제 연구 - 선 도 학 교 운 영	1,000	○ 학교회계전출금 -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지원(공립) 25,000천원 × 20교 = 500,000천원 -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지원(사립) 25,000천원 × 20교 = 500,000천원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464

□ 교육회복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531)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소관 **교육회복지원**은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66억 3,0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고, 자체재원 14억 4,000만원을 추가하여 8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21〉 교육회복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8,083	8,070	16,153	69,877
	교육회복체계적추진지원	4	-	4	-
	학 습 지 원 튜 터	8,078	1,440	9,518	-
	교육회복체계적추진지원 (특 별 교 부 금)	-	30	30	4
	학 습 지 원 튜 터 (특 별 교 부 금)	-	6,600	6,600	25,213

- 사업내용중 **학습지원튜터**는 사립초를 제외한 초·중·고 희망학교에 기초 학력 보장 프로그램 및 학습보충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80억 7,800만원) 보다 14억 4,000만원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나,
- **학습지원튜터(특별교부금)**는 '23년(252억 1,300만원) 보다 △186억 1,300만원 감소한 66억원이 교부된 바, 학습지원튜터 지원 규모가 전년 보다 축소됨에 따라⁸⁶⁾ 추경예산을 통해 '24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자체재원 14억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추 경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학 습 지 원 튜 터	1,440	○ 학교회계전출금 - 공립중고 15,000천원×20명=300,000천원 - 공립초 15,000천원×60명=900,000천원 - 사립중고 15,000천원×16명=240,000천원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533

주1) 사업기간: '24. 8. ~ 12. (5개월)

학습지원튜터 전일제 1인 채용 시 예산[8개월 기준]: 23,400천원 내외⁸⁷⁾ (1개월 약2,925천원)

8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06~409, II.3. 추경사유
 ■ 2024년 교육결손 해소 특별교부금 감소로 인한 학습지원튜터 지원 인원 급감
 - (2023년 지원인원) 1,104명 → (2024년 지원인원) 656명

□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542)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소관 **기초학력향상지원**은 기정예산(127억 3,000만원)보다 15.7%, 20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 사업내용중 **학습상담운영**의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 지원’은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을 전문지원기관에 연계하고자 ’24년도 신규 신청 예상인원 1,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예산(11억 8,000만원) 보다 20억원을 증액한 31억 8,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23〉 기초학력향상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	계	12,730	2,000	14,730	19,356
	기 초 학 력 보 장 지 원	8,549	-	8,549	14,589
	서울학습도움센터운영	282	-	282	324
	학 습 상 담 운 영	3,899 ^{주1)}	2,000	5,899 ^{주2)}	4,442

※ 주1) 학습상담운영중 ‘심층진단및치유연계지원’(1,180백만원) 포함

주2) 학습상담운영중 ‘심층진단및치유연계지원’(3,180백만원) 포함

8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140('24. 1. 4), “2024 학습지원 튜터 지원 사업 공모 계획(안)”

〈표 4-24〉 학습상담운영 편성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산안 (A+B)	추 경 예 산 안 편 성 내 역
합	계	3,899	2,000	5,899	
	학습상담운영	3,899	2,000	5,899	○ 인건비 : 692,274천원 ○ 운영비 : 1,907,290천원 ○ 여비 : 26,400천원 ○ 업무추진비 : 16,500천원 ○ 민간이전 - 보험부담금, 보험료등 : 77,220천원 - 심층진단및치유연계지원 : 3,180,000천원

-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기정예산으로 신규지원이 불가하여 추가로 2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증액 편성요청된 민간이전(학생치료비) 20억원은 '24년 예상 신규 인원 1,000명을 위한 소요재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다만, '24년도 예상 수요 인원은 1,895명⁸⁸⁾으로 본예산과 금번 추경예산 안에 총 3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난 '23년도에는 동 사업 최종예산액이 9억 6,000만원으로 1,841명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⁸⁹⁾

8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543, Ⅱ.3. 추경사유

■ ('24년 예상 수요 인원) 약 1,895명

①'23~'24년 지속지원 (802명)+②'23년 하반기 이후 대기 (93명)+③'24년 예상 신규 (1,000명)

89) '23~'24년도 학습상담운영(심층진단및치유연계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최종예산 ^{주1)}	산출내역	지원(수요)인원 ^{주2)}
2023년	960	2,000천원×480명	1,841명 ^{주3)}
2024년	3,180	2,000천원×1,590명	1,895명

※ 주1) 2024년의 경우 본예산(1,180백만원)과 추경예산안(2,000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주2) 2024년의 경우 예상 수요인원

주3) 자료근거: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544, Ⅳ.1. 추진실적

- 2023년도 추진실적: 학생 통합 치유지원(난독·경계선지능): 1,841명

- 지원대상인원은 전년(1,841명) 보다 54명, 2.9% 증가(1,895명)하는 것이나, 소요재원은 전년(9억 6,000만원) 보다 22억 2,000만원, 231.3% 증가(31억 8,000만원)하는 것은 지원대상인원 대비 소요재원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요재원이 적정규모인지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사업 추진기간을 추경예산안 제출('24년 5월 27일) 이전인 '24년 4월부터 '24년 12월까지로 기재하고 있어⁹⁰⁾ 사업 부서가 의회의 의결결과를 예단하고 해당 사업내용과 관련된 절차를 미리 진행하였다면,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정하고 있는 예산의 의결권을 위반한 사안에 해당되어 기정예산의 지출내역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학습상담운영은 예산과목을 민간이전(학생치료비)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동 사업내용은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에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판단되는 바,⁹¹⁾

〈표 4-25〉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추 경 소 요 예 산	산	출	내	역
학	습	상	담	운	영	2,000	○ 민간이전 - 심층진단 및 치유연계 지원 2,000천원 ^{주)} × 1,000명 × 1회	

※ 주) 평균 지원횟수 31.5회(1차당 30~33회)×7만원(1회기당 6~8만원)=220만원(6개월분)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 **학생치료비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과목임에도 인건비성 경비를 **학생치료비**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편성 사례일 수 밖에 없어 편성요청된 예산과목은 민간인이 제공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보상비 성격인 **민간인보상금**⁹²⁾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0)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543, Ⅲ.1. 학습상담운영
■ 기간 : 2024. 4. ~ 12.

9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543, Ⅱ.3. 추경사유
■ ('24년 예산 편성액) 약 25억원(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 인건비 및 교구비 포함)

□ **평생교육시설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583)

-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시설지원**은 기정예산(159억 9,600만원) 대비 △4.1%, △6억 5,100만원 감액된 153억 4,400만원을 경정 요청한 것으로, ①**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지원**은 3억 9,500만원 증액하고 ②**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교직원 인건비 및 학습비 지원)은 △10억 4,6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임

- ①**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지원**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23학년도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 신규 사업인 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초·중·고 청소년 학습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 당초 무상급식과 동일한 재원분담(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3년도에는 재원분담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 재원으로 급식비 단가⁹³⁾의 50%인 3,000원만 지원하였고, '24년 본예산에도 서울시교육청 재원으로 급식비 단가⁹⁴⁾의 50%인 3,15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바 있으나,

- '24년 3월, 교육청-서울시-자치구⁹⁵⁾간 재정 분담 및 전액 지원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전입금을 편성하여⁹⁶⁾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초·중·고 청소년 학습자 급식비는 전액(1식당 6,300원) 지원⁹⁷⁾된 것으로 사료됨

92) 교육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p.73

310-6 기타보전금	민간인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상금 및 보상금 ○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 치료비
-------------	--------	---

93)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중 외부 운반급식 지원단가 적용(1식 6,000원)

94)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중 외부 운반급식 지원단가 적용(1식 6,300원)

95)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위치한 자치구만 해당함

①서울자동차고(용산구), ②청량정보고(동대문구), ③정암미용고(동대문구), ④한림연예예술고(송파구)

96) ■ 전체 증액 요청액(3억 9,500만원)중 ①서울시전입금 2억 1,200만원, ②자치구전입금 8,500만원, ③신청자 증가에 따른 교육청 재원 추가 편성액 9,800만원으로 확인됨

■ 금번 추경안에는 현재까지 확정된 서울시 및 자치구 전입금만 편성하고, 향후 전입금 추가 확정(학생 수에 따라 변동)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예정으로 확인됨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 답변자료

- ②**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은 교직원 인건비 및 초중고과정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학력인정 서현초등학교'98)의 자진 폐쇄 신고 수리99)에 따라 금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지('27년 3월 폐쇄 예정) 하여 학생 수가 감소하였고, '23년 5월, '학력인정 ○○○○학교'의 한시적 지위 승계 수리100)후 감소된 학생 수를 반영하여 교직원 인건비 및 학습비 지원금을 감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학력인정 ○○○○학교의 경우, '23년 4월, 설치자 유고 이후 개정된 법률101)에 따른 설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23년 5월, 한시적 지위승계 신고 수리102)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결정되고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바, 이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 수요 감소를 본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 요청하는 것으로, 교육재정의 한정성에 공감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편성사례일 수 있어 향후 유사 편성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7)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525('24. 1.22) “2024학년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계획(안)”

98)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3길 18(신길동)

9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333('24. 1. 9),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처리결과 알림”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1158('23. 5.23) “학력인정 ○○학교 설치자(한시적) 지위승계 신고 수리”

101) 「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07.12.14, 전부개정, '08. 2.15, 시행]

- 개정전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됨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11158('23. 5.23) “학력인정 ○○학교 설치자(한시적) 지위승계 신고 수리”

〈표 4-26〉 평생교육시설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15,996	△651	15,344	16,729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240	-	240	380
	평 생 교 육 기 획 운 영	20	-	20	20
	학 력 미 인 정 평 생 교 육 시 설 지 원	100	-	100	100
	① 학력인정평생교육 시 설 급 식 비 지 원	555	395	951	376
	학 력 인 정 평 생 교 육 시 설 지 도 운 영 비	5	-	5	8
	② 학 력 인 정 평 생 교 육 시 설 지 원	15,074	△1,046	14,072	15,844

□ 선진운동부육성,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753, p.765)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선진운동부육성(전임코치 인건비),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은 '23년 12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3년 단체(임금) 협약」¹⁰³⁾이 체결됨에 따라 '24년도 적용 운동부 전임코치 및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요청 한 것으로,

- ①**전임코치 인건비**¹⁰⁴⁾는 기정예산(183억 4,400만원) 대비 5.1%,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12196('23.12.28), “2023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임금)협약 체결 안내”

공동임금체계(1유형, 2유형) 인상액 주요 내용 및 적용 시기			
기본급(월)	근속수당(월)	급식비(월)	명절휴가비(연)
1유형 2,118천원 → 2,186천원	상한 1년 확대 0원~858천원	14만원→15만원	160만원→170만원 ※설, 추석 각 85만원
기관 : '24년 1월 / 학교 '24년 3월			기관 및 학교 '24년 1월

104) 「2024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계획(매뉴얼)」('24. 1.), p.100

[참고 4]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기준('24. 3. 1, 시행)

9억 4,000만원을 증액한 192억 8,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단체(임금) 협약체결로 인한 인상분과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24학년도부터 정액 지원(연200만원)하는 연장근로수당¹⁰⁵⁾ 소요액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②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은 기정예산(132억 3,500만원) 대비 6.9%, 9억 1,500만원을 단체(임금)협약 인상분으로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단체(임금)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¹⁰⁶⁾에 따라 노사간의 계약에 있어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은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이나, ①전임코치 인건비와 ②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의 경우 사업기간을 '24년 3월부터 '25년 2월로 명시하고 있는 바,
- 각급 학교의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고려한 사업기

-
- A형 : 전임코치 인건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임코치 인건비 예산으로만 지도자 인건비 지급)
 - B형 : 전임코치 인건비 + 학부모 부담 경비로 인건비 지원
 -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임코치 인건비 예산에 학부모 부담 경비로 조성한 예산에서 지도자 인건비를 추가로 더하여 지급 가능(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을 위하여 A형 권장, 반드시 추가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과 지도자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부모 부담 경비로 전임코치 인건비 지원 상한액을 설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임코치 배정 물량 회수)
 - C형 : 일반코치 인건비 = 학부모 부담 경비 등으로 인건비 지원
 - 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 등으로 조성한 예산으로만 지도자 인건비 지급
 -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학교운동부 관련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학교를 후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 일반코치의 합리적인 인건비 책정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비 경감을 위하여 일반코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A형 기준 준용 권장)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362('24. 1. 8)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인건비 기준 개정(안)”
- '24학년도부터 연장근로수당 1인당 정액으로 일괄 교부(연200만원), 실제 연장근로 시에만 지급,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 조정 또는 대체 휴일 사용

- 10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간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 시점부터 「지방재정법」 107)이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편성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 '24 회계연도에 실제 필요한 소요액에 한정하여 승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표 4-27〉 선진운동부육성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21,232	940	22,172	21,829
	① 전 임 코 치 인 건 비	18,344	940	19,284	18,342
	취 약 종 목 지 원	2,699	-	2,699	3,244
	학 생 선 수 인 권 교 육 강 화	188	-	188	243

〈표 4-28〉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 지원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13,235	915	14,150	12,248
	②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	13,235	915	14,150	12,248

107)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기획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778)

-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학교급식기획운영**은 ①급식로봇도입 30억원과 ② 식기류렌탈세척운영 20억원을 증액하고자, 기정예산(4억 900만원) 대비 1,128.5%, 50억원 증액된 54억 900만원으로 경정 요청한 것임
- 동 사업은 최근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 부족(결원율 8.8%)과 이와 연동되어 발생하는 부실급식 사태¹⁰⁸⁾를 완화시키고자 급식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①급식로봇도입(30억원)은 급식종사자 결원교, 과대 학교 등 14교에 1대당 2억 5,000원의 급식로봇을 도입하는 것이며¹⁰⁹⁾ ②식기류 렌탈세척운영 (20억원)은 직영급식 학교중 희망 학교 100교(1교당 2,000만원)를 대상으로 외부 세척전문 업체에 식기류 세척 업무를 위탁하는 것임

〈표 4-29〉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직 종 명)		정 원 (A)	현 원 (B)	과 부 족 (C = B - A)	결 원 율 (C / A)
합 계		4,953	4,517	△432	△8.8
조 리 사		945	945	-	-
조 리 실 무 사		4,008	3,572	△432	△10.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5209('24. 5.29) “2024년도 교육공무직 인력관리 심사현황”

108) MBC('24. 5.22), “급식종사자, 학교급식 부실사태, 급식실 노동자 부족이 원인”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80

1. 급식로봇 도입

- 기간 : 2024. 7. ~ 12.
- 대상 : 조리종사원 결원교, 과대학교, 시설여건(급식실 공사, 전기시설 등) 가능 학교
- 내용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 참여 및 자체 도입 추진
 - 내역 : (공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수요처와 1대1 대응투자로 진행(4교, 4대)
(자체) 10교 도입 추진
 - 사양 : 튀김 로봇 또는 튀김·국탕 겸용 2in1 로봇
 - 단가 : 대당 250,000천원
- 소요예산 : 30억원
 - (공모) 총사업비 5억원, 125,000천원(1:1 대응투자) × 4교(4대)
 - (자체) 총사업비 25억원, 250,000천원 × 10교(1대)

- ②식기류렌탈세척운영의 경우, '23년도에 64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업 운영 만족도가 높고, 사업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결과보고 되었으나,¹¹⁰⁾ ①급식로봇도입의 경우에는 지난 '23년도에 외부기관(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을 통해 자체재원 투자 없이 1교¹¹¹⁾에 한해 시범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어, '24년도에는 공모사업과 함께 자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¹¹²⁾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급식로봇이 복잡한 요리에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조리로봇 관리·운영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 문제도 제기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¹¹³⁾ 사업 효과성과 사후 관리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된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0〉 학교급식기획운영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09	5,000	5,409	45
	① 급 식 로 봇 도 입	-	3,000	3,000	-
	무 상 급 식 비 예 산 운 영 지 도 · 점 검	0.4	-	0.4	0.9
	② 식기류렌탈세척운영	380	2,000	2,380	-
	유치원급식기본방향수립	12	-	12	15
	학교급식기본방향연수	10	-	10	20
	학 교 급 식 위 원 회 운 영	4	-	4	5
	학 교 급 식 유 관 기 관 협 의 회 운 영	2	-	2	4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평교육과-9804('23.12. 5), “2023 식기류 렌탈 세척 운영 사업 결과 보고”

111) (성북강북) 송곡중학교 : 총 4대 (국탕로봇 1대, 복음로봇 2대, 유탕로봇 1대)

112)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평교육과-6168('24. 4.15), “학교 급식실 급식로봇(로봇팔) 추가 도입 추진계획(안)”

113) ■ 연합뉴스('24. 5.14), “조리원 부족, 서울 급식로봇 도입에 노조 비효율적”

■ 뉴시스('24. 5.22), “급식종사자들, 조리로봇 뒤치다꺼리 하느라 일 더해”

□ 방과후활동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805)

- 특수교육과 소관 방과후활동지원중 특수학교늘봄학교는 '24학년도 2학기 서울형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①단기 행정인력지원 4억 7,000만원과 ②환경구축비 20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31〉 방과후활동지원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	계	6,175	2,540	8,715	7,125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6,175	-	6,175	7,125
	특수학교늘봄학교	-	2,540	2,540	-

〈표 4-3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편성내역
합계	2,540	-	2,540	
특수학교 늘봄학교	2,540	-	2,540	○ 단기 행정인력인건비 지원(공립) $((12,140\text{원} \times 8\text{시간} \times 27\text{일} \times 6.3\text{월} \times 1\text{명} \times 11\text{교}) \times 1.12) + (12,140\text{원} \times 14\text{시간} \times 16\text{주} \times 1\text{명} \times 3\text{실}) = 211,686\text{천원}$ ○ 단기 행정인력인건비 지원(사립) $(12,140\text{원} \times 8\text{시간} \times 27\text{일} \times 6.3\text{월} \times 1\text{명} \times 14\text{교}) = 259,036\text{천원}$ ○ 환경구축비(공립) $(40,000\text{천원} \times 6\text{교} \times 1\text{실}) + (40,000\text{천원} \times 5\text{교} \times 2\text{실}) + (30,000\text{천원} \times 11\text{교}) = 970,000\text{천원}$ ○ 환경구축비(사립) $(40,000\text{천원} \times 11\text{교} \times 1\text{실}) + (40,000\text{천원} \times 3\text{교} \times 2\text{실}) + (30,000\text{천원} \times 14\text{교}) = 1,100,000\text{천원}$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806

○ ①**단기행정인력지원**은 '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실시에 따라 공·사립 특수학교 전체 25교(공립 11교, 사립 14교)에 '24년 하반기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늘봄실무사) 인건비 4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24년 7월부터 지원 예정인¹¹⁴⁾ 특수학교 늘봄실무사 채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24. 5.27) 이전인 '24년 5월 16일, 늘봄실무사 채용공고를 공립초와 함께 실시하고, '24년 6월 19일 근무기관을 확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¹¹⁵⁾

- 동 사례는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공립초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지원)의 경우와 같이 추경 편성요청 사업을 의회 의결전 미리 추진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확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향후 유사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②**환경구축비**는 '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사립 특수학교 전체 25교(공립 11교, 사립 14교)에 ㉠늘봄교실과 ㉡교사연구실을 조성하기 위해 20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늘봄교실 구축비(4,000만원/1실)는 바닥난방, 안전쿠션(벽 충돌방지)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교사연구실 개선비(3,000만원/1실)는 일반교실을 늘봄교실 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희망하는 학교에 학년연구실 조성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24년 3월, 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시설설치 수요조사¹¹⁶⁾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1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06, Ⅲ. 추경 증감내용
1. 특수학교늘봄학교

■ 기간 : 2024. 7. ~ 12.

115)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4808('24. 5.16), “늘봄실무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실시” 재구성

■ 공고일자 : '24. 5.16

■ 근무기관 : **공립초, 특수학교**로 채용·근무지 배치

■ 추진일정 : 접수기간 '24. 5.20 ~ 5.22

1차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24. 6. 3

2차 면접 심사 일정 '24. 6. 8

최종 합격자 발표 '24. 6.11

근무기관 발표 '24. 6.19 (예정)

※ 공립초와 특수학교 늘봄실무사 채용 공고를 함께 실시함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3105('24. 3.28), “2024. 2학기 서울형 특수학교 늘봄 추진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협조 요청”

□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871)

- 교육재정과 소관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은 스쿨매니저 시범운영 및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20억 9,800만원) 보다 66.0%, 13억 8,500만원 증액된 34억 8,4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33〉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공·사립학교	운영비지원	2,098	1,385	3,484	8,360

- 사업내용중 **스쿨매니저운영**은 시설개방 학교의 안전·보안을 위한 시설관리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자치구와 분담(5:5)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9개 자치구와 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계획인 바,¹¹⁷⁾ 자치구별 3개 운영학교를 공모하여 27교에 대한 스쿨매니저 파견 및 시설보험가입비 대응투자예산 9,500만원과 스쿨매니저시범학교인센티브 5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학교중 '23학년도 개방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18억원) 보다 41.7%, 7억 5,000만원 증액된 25억 5,0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117)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322('24. 4.29), “2024년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스쿨매니저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②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전보고 답변자료」, p.78

■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추진상황

- '24년 6월 현재 6개 자치구 협약완료(성동·금천·동작·용산·중랑·마포구), 1개 자치구(광진구) 협의중이며, 미협약 자치구와 지속 협의 예정

-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은 '23년도에 총 355교에 1,480만원부터 3,200만원까지 학교당 평균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¹¹⁸⁾ '24년도 본예산 편성시 '23년도 최종예산(80억원) 보다 △77.5%, △62억원 감액된 18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표 4-34〉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 지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 부 내 용	추경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공 · 사 립 학 교 운 영 비 지 원	1,385	○ 자치단체등이전 - 스쿨매니저운영 3,531천원×27교=95,337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 (공립)개방인센티브 10,000천원×55교=550,000천원 - (사립)개방인센티브 10,000천원×20교=200,000천원 - 스쿨매니저시범학교인센티브 20,000천원×27교=540,000천원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872

〈표 4-35〉 학교시설개방인센티브 지원 예산 및 집행 현황('23년~'20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 산 현 액 (A)	집 행 액 (B)	불 용 액 (A - B)
2020년	9,000	8,999	1
2021년	5,100	2,736	2,364
2022년	4,000	2,449	1,551
2023년	8,000	7,309	691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87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4189('24. 2.23)

11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4189('24. 2.23), “2023년(2022학년도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결과 보고”

- 1구간-3,200만원, 2구간-2,600만원, 3구간-2,000만원, 4구간-1,740만원, 5구간-1,480만원

〈표 4-36〉 학교시설개방인센티브 지원 대상 학교 현황

(단위 : 교, %)

구 분		2 0 2 1 년 (20학년도 실적분)	2 0 2 2 년 (21학년도 실적분)	2 0 2 3 년 (22학년도 실적분)	전 년 대 비 증 감 률
계		171	119	355 ^{주)}	198.3
학교 수	공 립	142	90	292	224.4
	사 립	29	29	63	117.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4189('24. 2.23)

※ 주) 2022학년도 학교 체육시설 연 100시간 이상 개방 학교수

□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사업별 설명자료, p.1001)

-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은 기정예산액(28억 4,400만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60억 4,4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표 4-37〉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 0 2 3 년 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2,844	3,200	6,044	12,428
	서울형메타버스플랫폼 구 축 및 운 영	408	-	408	1,288
	시스템구축운영비(뉴쌤)	919	-	919	1,451
	인공지능기반맞춤형 교수학습통합플랫폼	1,516	3,200	4,716	9,688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232

- 동 소요예산은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¹¹⁹⁾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3년 10월부터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바, 수탁기관이 '2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분담금을 납부요청함에 따라¹²⁰⁾ '24년도 분담금 32억원을 수탁기관에 이전하고자 증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동 소요예산은 수탁기관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위탁금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24년도 본예산과 '24년도 제1회 추경안에는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등이전중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¹²¹⁾로 편성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은 소모성 경비에 해당하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편성요청된 예산과목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9)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부 합의” ('23. 5.18)

1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기술전략팀-482('24. 4. 4)

(단위 : 백만원)

사업비 총액	기납입액	잔여금액		
		계	금회납부	납부예정액
16,937	9,660	7,276	3,200	4,076

121) 교육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3. 8.) [별표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330 자치단체등이전			
330-05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330-06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 **교육연구개발지원** (사업별 설명자료, p.1005)

-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교육연구개발지원**은 기정예산액(19억 4,9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9억 6,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바,

〈표 4-38〉 교육연구개발지원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도			2023년 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1,949	20	1,969	2,560
	① 교육 정책 연구	241	△6	235	703
	③ 국 내 외 학 술 교 류	39	20	59	114
	서 울 교 육 발 간	141	-	141	157
	서 울 교 육 종 단 연 구	747	-	747	794
	서 울 국 제 교 육 포 럼	202	-	202	129
	② 혁신미래교육연구소운영	577	6	583	660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193

- ①**교육정책연구**는 현장연구 운영 지원 물량이 감소하여 복리후생비(교직원 학술연구지원비) △600만원을 감액하고¹²²⁾, ②**혁신미래교육연구소운영**은 연구위원의 자체연구수당을 신설하여 운영비 600만원을 증액¹²³⁾요청한 것임

12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889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05

(단위 : 백만원)

구분	원가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
현장연구운영	[210-01] 교직원학술연구지원비	16	△6	10

12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889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05

(단위 : 백만원)

구분	원가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증감	추경예산
자체연구수당	[210-06] 기타운영수당	-	6	6

- ③**국내외 학술교류**는 위탁용역비 1,800만원과 인쇄물제작비 200만원을 포함한 운영비 총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 긴급 현안에 대해 대응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기간이 짧은 소규모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비 1,8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교육연구개발지원**은 최근 4년간 평균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 미만에 해당하나, 평균 불용액이 1억 8,600만원으로 검토되는 바, 소요 예산을 증액요청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회계연도중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하면 사업내용이나 예산과목중 변경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표 4-39〉 최근 4년간 교육연구개발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	불용액	
				금액	비율
2023	2,673	2,257	153	262	9.8
2022	2,290	2,024	126	139	6.1
2021	2,540	2,277	104	158	6.2
2020	2,034	1,794	80	159	7.8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007

□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사업별 설명자료, p.1105)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는 기정예산액(40억 300만원)보다 62.3%, 24억 9,600만원이 증액된 64억 9,9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4-40〉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A + B)
어린이활동공간환경개선		4,003	2,496	6,499
	운 영 비	943	-	943
	학 교 회 계 전 출 금	3,060	2,496	5,556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28

-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령」¹²⁴⁾은 유예기간인 '25년 12월까지 어린이활동공간인 학교시설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22년도부터 학교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 '24년도 본예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174교에 대한 환경개선비 30억 6,0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¹²⁵⁾하였으나, 이후 부적합 학교가 추가 발생하여 1교당 3,200만원 수준으로 78교에 대한 개선비 24억 9,6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24)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2021. 7. 6, 시행 2022. 4. 7]

[별표2]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25)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2239

③ 인건비

□ 공무원(교원, 전문직,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83)

○ 예산담당관 소관 **공무원인건비**는 기정예산(4조 6,090억 4,400만원) 대비 0.4%, 190억 2,300만원을 증액한 4조 6,280억 6,7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¹²⁶⁾에 따라 교원의 교직수당가산금(학급담당교사수당) 인상분(월13만원 → 월20만원) 139억 2,3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②상반기 명예퇴직수당 집행 현황 및 하반기 명예퇴직수당 수요를 반영하여 교원(50명) 및 교육전문직원(1명) 명예퇴직수 추가 소요액 51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표 4-41〉 공무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4,609,044	19,023	4,628,067	4,469,070
보수	수	3,435,919	13,923	3,449,842	3,414,406
	교원	2,943,183	13,923	2,957,107	2,935,223
	지방공무원	436,503	-	436,503	424,204
	교육전문직원	56,231	-	56,231	54,978
	명예퇴직수당	112,190	5,100	112,190	112,400
	교원	107,600	5,000	112,600	107,600
	지방공무원	3,990	-	3,990	4,200
	교육전문직원	600	100	700	600
	법정부담금	989,052	-	989,052	868,427
	맞춤형복지비	71,882	-	71,882	73,836

1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4. 1. 5, 일부개정, '24. 1. 5 시행)

-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명예퇴직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¹²⁷⁾ 교원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교부하고 있는 바,
- 교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교원 수급,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예퇴직에 필요한 예산은 적정 확보되어야 할 것이나, 최근 2년간 계속하여 명예퇴직 인원이 당초 예상인원 보다 초과되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의 이용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인건비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필수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¹²⁸⁾ 단서 규정에 의해 「예산충척」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의 이용 등 변경사용에 대해 소요재원 확보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사료되나
- 지난 2년간 계속하여 명예퇴직 인원이 당초 예상인원 보다 초과된 것은 결국 명예퇴직 수요예측을 잘못된 결과일 수밖에 없고, 부정확한 명예퇴직 수요예측은 교육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은 물론 교원 수급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할 수밖에 없어, 향후 소요예산 산출 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2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592호, '15.10.20, 일부개정, '16. 1. 1 시행)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77호, '15.11. 5, 일부개정, '16. 1. 1 시행)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공식	단위비용
1. 교직원 인건비	명예퇴직 교원 수	1)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 단위비용 2)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육감의 신청 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교원 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 수요조사 기준으로 교부 후 차차년도 정산

128)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표 4-42〉 공립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명예퇴직수당 예산 집행 현황(2023~202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E)	집행잔액 (F=D-E)	
			본 예 산 (A)	추경증감 (B)	이용증감 (c)			계 (D=A+B+C)
2023년 ^{주1)}			107,600	-	-	107,600	106,100	1,499
	초 등 교 원		53,800	-	4,546	58,346	58,309	37
	중 등 교 원		53,800	-	△4,546	49,253	47,791	1,462
	교육전문직원		-	-	-	-	-	-
2022년 ^{주2)}			97,800	△728	2,600	99,671	97,008	2,622
	초 등 교 원		46,200	2,600	2,600	51,400	48,781	2,618
	중 등 교 원		51,000	△3,000	-	48,000	47,956	44
	교육전문직원		600	△328	-	272	272	-

주1) '23년 이용 증감 : 중등교원명예퇴직수당 → 초등교원명예퇴직수당('23. 2.24)

주2) '22년 이용 증감 : 법정부담금 → 초등교원명예퇴직수당('22. 8.22)

〈표 4-43〉 공립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명예퇴직 수요 예측 현황(2024)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소요(예상)액						추경 증감	
			2월말 ^{주1)}		8월말(예정) ^{주2)}		합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08,200	947	90,705	224	22,567	1,171	113,273	51	5,100
	초등교원	53,800	489	48,784	100	10,016	589	58,800	50	5,000
	중등교원	53,800	456	41,684	121	12,089	577	53,773	-	-
	교육전문 직원	600	2	238	3	462	5	700	1	100

주1) '24년 상반기(2월말) 명예퇴직수당 기지금액('24. 2.)

주2) '24년 하반기(8월말) 명예퇴직수당 지급예상액('24. 8.)

※ '24년 하반기 명예퇴직인원은 '24년 7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후 확정(현재 공고중)

□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사업별 설명자료, p.90)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근로자인건비**는 기정예산(391억 4,700만원) 대비 △10.2%, △39억 8,100만원을 감액한 351억 6,6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바,

- ①**지방공무원 대체인건비**는 '23년도 결산 및 '24년도 상반기 집행 현황 분석 결과, '24년도 본예산 편성 인원(350명) 대비 집행인원의 감소(△20명)가 예상되어 대체인력 보수 및 법정부담금 △7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 ②**장애인고용부담금**은 '24년 1월, '23년도 부과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완료(79억 100만원)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금액(112억 7,500만원) 대비 △32억 2,900만원 불용이 예상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불용 예상액을 감액요청 하는 것으로 검토됨

〈표 4-44〉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 종 예 산
합	계	39,147	△3,981	35,166	32,332
	①지방공무원대체인건비	14,560	△751	13,809	15,173
	장 애 인 고 용 의 무 제 관 련 운 영	24,586	△3,229	21,357	17,159
	장애인근로자인건비	13,311	-	13,311	12,768
	②장애인고용부담금	11,275	△3,229	8,046	4,391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 '16년도에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및 근로자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의무고용 미달 인원만큼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하는 부담금으로서, 교육감의 경우 부칙 제2조

에 의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21년부터 '23년도 납부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받아 납부하였으나,¹²⁹⁾

- '24년도 납부분('23년도 부과분)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하여 감면 없이 고용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24년도 본예산에는 '23년도 최종예산 대비 156.8%, 68억 8,400만원 증액한 112억 7,500만을 편성하여, '24년 1월, '23년도 부과분 79억 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됨

〈표 4-45〉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2024~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4 년		2023년	2022년	2021년
		본예산액	납 부 액	납 부 액	납 부 액	납 부 액
합	계	11,275	7,901	3,977	3,946	4,187
	(공무원) 유아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383	330	149	119	85
	(공무원) 초등학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7,676	5,463	2,725	2,854	2,826
	(공무원) 중학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	3,071	2,108	1,103	973	1,276
	근로자 ^{주1)} 장애인고용부담금	145	-	-	723	1,111

주1) 근로자는 '22년도 부과분('23년도 납부분)부터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여 고용부담금 미납부

1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 1천분의 38 (이하 생략)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부칙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생략)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고용 부담금으로 '21년도부터¹³⁰⁾ 총 200억 1,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근로자의 경우, '22년도부터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하여¹³¹⁾ '23년도부터('22년도 부과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교원)은 계속하여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 우리 위원회에서 '23년도 예산안 및 '24년도 예산안 심사시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률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¹³²⁾ 개선되지 않아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무원(교원)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입학 인원과 연동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16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20년도부터 공무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 장애인고용부담금 소요예산 편성 및 납부 등을 반복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원양성과 채용시 장애유형에 따라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거나, 장애 구분모집을 확대하는 등 법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30) (근로자) 고용부담금 기납부 대상, (공무원) '21년부터 납부 대상('20년 부과, '21년 납부)

131) ■ '22년도 월평균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 4.3% ('22년 기준 의무고용률 3.6%)

■ '23년도 월평균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 4.3% ('23년 기준 의무고용률 3.6%)

13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22.12.16), p.6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23.12.15), p.81

④ 시설사업비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시설사업비¹³³⁾는 기정예산(8,770억 7,800만원)보다 25.0%, 2,190억 4,600만원을 증액한 1조 961억 2,400만원을 편성 요청 한 것으로, ①일반재원 1,886억 500만원과 ②목적지정재원 30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6〉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정 예 산	추 경 증 감 액	추 경 예 산 안	재 원 구 분
877,078	219,046	1,096,124	① 일반재원 : 188,605 ② 목적지정 : 30,441

□ 학교신증설 (사업별 설명자료, p.849, p.853)

- 학교신설의 경우, (동부)(가칭)동진학교¹³⁴⁾를 포함한 7교¹³⁵⁾에 일반재원으로 건설비, 보전금, 사전조사비 99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표 4-47〉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 경 예 산 안 (A)	기 정 예 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일 반 재 원	목 적 지 정 우 선 확 정	추 경 편 성
44,058	34,143	9,915	29.0	9,915	-	-

133) 시설사업비 내역

- 학교신증설 : 학교신설, 교실증축
- 일반시설 :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유지관리
- 급식시설 :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시설 보수, 급식시설 신증축

134) (동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번지 일대

135) 「학교신설비 편성 현황」

- 공립유(2원) : (중부)남산초병설유, (강동송파)(가칭)강현유 *감액
- 공립초(2교) : (강동송파)위례솔초, (강남서초)(가칭)개원2초
- 공립중(1교) : (강동송파)위례솔중
- 공립특수(2교) : (동부)(가칭)동진학교, (성동광진)(가칭)성진학교

- **(중부)남산초병설유치원**¹³⁶⁾은 '24년 9월, 개원 예정으로 '22년도에 착공하여 '24년도 본예산까지 96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공사 진행중 소음 방지시설 추가 소요, 물가상승 등으로 시설비 부족금액 2억 1,7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강동송파)(가칭)강현유치원**¹³⁷⁾은 '25년 3월, 개원 예정으로 '24년도 본 예산에 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억 6,200만원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 '20년 9월, 자체 재정투자심사 시 총 사업비 102억 500만원에 대해 승인되었으나,¹³⁸⁾ '24년도 본예산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141억 2,800만원으로 투자심사금액의 38.4%를 초과한 바,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¹³⁹⁾에 따라 재심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었으나 재심사 없이 30%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편성하여 금번 추경안을 통해 당초 투자심사 승인 사업비 범위 내로 집행하기 위해 예산액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36) (중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2길 17(남산동2가), 병설7학급(특수1), '24. 9월 개원 예정

137)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6 일원, 단설9학급(특수1), '25. 3월 개원 예정

138)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185('20. 9.24), “제3회 자체재정투자심사 심사결과 안내”

■ 사업명 : (가칭)서울강현유 신설, 4. 사업비

(단위 : 억원)

유치원명	용지		시설		비용합계	심사결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강현유	1,462	교육청 : 38.91 지자체 : 0 사업자 : 0 총액 : 38.91	2,673	교육청 : 63.14 지자체 : 0 사업자 : 0 총액 : 63.14	교육청 : 102.05 지자체 : 0 사업자 : 0 총액 : 102.05	적정

139)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text{억원}) \times 20/100 + 150\text{억원}$$

2. 삭제
3. 투자심사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할 경우(△8억 6,200만원) **(가칭)강현유치원 신설**의 총 사업비는 132억 6,600만원으로 투자심사금액(102억 500만원)의 29.9%로 조정될 것으로 검토됨
- 동 감액요청건의 경우, '24년도 본예산으로 이미 투자심사금액의 30%를 초과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절차 위반을 치유하고자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한정된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편성사례를 추경을 통해 희석시키는 결과일 수 있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학교신설**의 경우, '24년도 본예산안 심사시 '(가칭)신길유' 신설에 대해 총 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투자심사 승인 후 3년 이상 사업 추진(착공)이 지연되어 재심사 대상이나,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삭감 된 사례가 있는 바,¹⁴⁰⁾
- 사업기간이 중장기 소요되는 **학교신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도 필요할 것이나, 각 연도 소요예산과 총 사업비 등을 편성 당시부터 검토하여 불법요인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편성단계의 검증부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결과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검증능력 자체가 개선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40) ■ 교육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23.11.29), p.14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23.12.15)

◇ 첨부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항목별 예산안	감액금액	사업내역
28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49,611,483	△2,789,302	학교신설(신길유치원)

〈표 4-48〉 (가칭)강현유치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 교 명	총 사업비 (투자심사)	기 확 보 액 (A)				추 증 (B)	경 감 액 (B)	총 소 요 액 (B - A)
		'22본예산	'23본예산	'24 본예산	계			
(가칭)강현유	10,205	5,587	6,151	2,390	14,128 (38.4) ^{주1)}		△862	13,266 (29.9) ^{주2)}

주1), 주2) 투자심사 승인 사업비 대비 초과 비율

- **(강동송파)위례솔초,¹⁴¹⁾ (강동송파)위례솔중¹⁴²⁾**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북위례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고자 신설한 학교로 '22년 3월 개교하였으나, 임시사용승인¹⁴³⁾을 통해 사용중인 학교시설에 대한 BF인증¹⁴⁴⁾을 위해 시설비를 위례솔초 1억 3,000만원과 위례솔중 1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동부)(가칭)동진학교¹⁴⁵⁾**는 '27년 9월, 개교예정으로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등 학교 신설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었고,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바,¹⁴⁶⁾ ①신축공사 발주를 위한 시설비(20억원) 및 ②개발제한구역

141)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북로2길 12(거여동), 45학급(특수1), '22. 3월 개교

142)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북로2길 10(거여동), 31학급(특수2), '22. 3월 개교

143)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12012('23.11.24), “학교시설 임시사용승인”

144)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전문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145) (동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700-11번지 일대, 18학급, '27. 9월 개교 예정

146) (가칭)동진학교 신설 추진경과

- '12.12. ~ '19.12. : 동부 특수학교 설립계획 최초 수립 및 변경 추진
- '20. 3. : (가칭)동진학교 설립 추진계획(부지 확정, 복합화시설 추가)
- '20. 4. : 교육환경평가 승인(서울시교육환경보호위원회)
- '20. 4. : (가칭)동진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교육청, 중랑구)
- '22. 3.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지방교육재정연구원)
- '22. 5.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 '22. 7. : 자체투자심사(적정)
- '22.10. :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23. 2.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3. 3. : 공유재산심의(적정),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 '23. 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원안가결)
- '24. 2. :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
- '24. 4. : (가칭)동진학교 사설사업 보상계획 공고(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서울주택도시공사)

보전부담금¹⁴⁷⁾(72억원)을 편성 요청 한 것임

- **(성동광진)(가칭)성진학교**¹⁴⁸⁾는 '29년 3월, 개교예정으로 교육환경평가비용 3,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49〉 (가칭)동진학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 교 명	총 소요액 (A)	기 확 보 액 (B)			추 경 증 감 액 (C)	향 후 소 요 액 (A-B-C)
		'23. 2회 추경예산	'24 본예산	계		
(가칭)동진학교	87,512	29,610 (토지매입비 27,810 설계비 1,800)	300 (설계비)	29,910	9,200 (부담금 7,200 시설비 2,000)	48,402

〈표 4-50〉 (가칭)성진학교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 교 명	총 소 요 액 (A)	기 확 보 액 (B)	추 경 증 감 액 (C)	향 후 소 요 액 (A - B - C)
(가칭)성진학교	37,700	-	30 (사전조사비 30)	37,670

- **교실증축**의 경우, **(강동송파)고덕초**를 포함한 6교¹⁴⁹⁾의 모듈러교실 임차료, 설계비, 시설비 등 49억 8,4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일반재원

14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148) (가칭)성진학교 신설 추진경과

- '22.12. : 동북권역 특수학교(가칭 성진학교) 설립계획 수립(성동구 성수동2가 333-128 일대)
- '23. 2. ~ : 사전기획 용역중

149)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 공립초(5교) : (서부)가재울초, (강동송파)고덕초, (강남서초)대현초, 서이초, 잠원초
- 공립중(1교) : (강동송파)잠실중 *감액

29억 8,400만원과 목적지정 재원(기타지원금) 20억원을 편성 요청 한 것임

〈표 4-51〉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증 감 액 (A - B)	증 감 륜	일 반 재 원	목 적 지 정	
					우 선 확 정	추 경 편 성
15,163	10,178	4,984	49.0	2,984	-	2,000

- **(강동송파)고덕초**¹⁵⁰⁾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신규아파트 입주가 '24년 1월부터 시작되어 고덕초 과밀학급이 예상됨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 및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25년 3월, 6교실을 증설하고자 총 20억원¹⁵¹⁾을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으로, 전액 공공주택 개발사업자의 기부채납에 따른 목적지정재원(기타지원금)으로 확인됨¹⁵²⁾

〈표 4-52〉 고덕초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학 교 명	증설완료	학 급 규 모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액	향후요액
강 동 송 파 교육지원청	고덕초	'25. 3.	28(2) [증 : 교실 6]	2,000	-	2,000	-

- **(강남서초)대현초**¹⁵³⁾는 학생밀집지역 과밀학급(급당 31.3명) 해소를 위해 6개 교실을 모듈로 교실로 설치하고자, ①모듈러 임차료 5억 6,000만원과 ②모듈러 공사비 9억 5,000만원을 포함한 15억 1,0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50)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2길 42(고덕동)
151) ①모듈러 임차료 16억 2,700만원, ②모듈러 설계비 3,000만원, ②부대공사비 3억 4,300만원)
152) 제일건설-2209('24. 5. 7), “고덕초 모듈러교사 설치를 위한 기부채납 협약서 제출의 건”
153)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98길 16(대치동)

〈표 4-53〉 대현초 교실증축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학 교 명	증 설 완 료	학 급 규 모	총 소 요 액	기 획 보 액	추 증 감 액	향 소 요 액
강 남 서 초 교육지원청	대현초	'25. 3.	38(2) [증 : 교실 6]	2,350	-	1,510	840

- (서부)가재울초¹⁵⁴⁾는 '24년 3월,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금번 추가경정예 산안에는 교실 12실 수평증축, 급식실 확장 및 리모델링, 시청각실 1개층 증축을 위한 시설비 15억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서부)가재울초는 '16년 3월, 54학급으로 개교하였으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과밀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바, 과밀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21년도부터 교실증축(12실 수평 증축, 급식실 확장 및 리모델링, 시청각실 증축)을 추진하였으나,¹⁵⁵⁾
- 사업추진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요청으로 교실증축 관련 학부 모 설명회를 개최('24년 4월)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24년 5 월), 학부모 다수가 교실증축을 반대하고, '24년 6월 현재 급당인원 26.3 명으로 과밀이 해소되어 증축보다는 내부 학습 공간에 대한 보강과 확충 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¹⁵⁶⁾

154) (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15길 61(남가좌동)

155) (서부)가재울초 교실증축 추진경과

- '21. 9. : 교실증축 사업 추진 요청
- '22.12.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 '23. 4. : 자체 재정투자심사(적정)
- '23.10. : 공유재산심의(적정)
- '23.11. : 공유재산 관리계획(원안가결)
- '24. 1. : '24년도 본예산 편성(1억 7,500만원, 설계비 1억 5,900만원, 설계공모보상금 1,600만원)
- '24. 3. : 설계공모 및 심사
- '24. 4. :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요청(15억원, 시설비)

156) 서울가재울초등학교-6607('24. 5.21), “2024 본교 증축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보고 및 학교장 의견 제출”

- 의견 수렴 결과 : 찬성 11.15%(129명), 반대 88.9%(1,029명)로 학부모 다수 교사동 증축 관련 반대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 요청한 15억원은 교실 12실 수평증축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경안 대로 교실증축이 필요한 사안인지 혹은 학부모와 학교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사안인지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확충 (사업별 설명자료, p.910, p.914)

○ **학교시설확충중 강당 겸 체육관은 (남부)구일초¹⁵⁷⁾**를 포함한 5교¹⁵⁸⁾에 대해 △75억 7,100만원을 감액 요청하고, **(본부)세화여중¹⁵⁹⁾**을 포함한 3교¹⁶⁰⁾에 대해 44억 5,100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기정예산(108억 7,100만원) 대비 △28.7%, △3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청한 바,

- 감액 요청한 5교는 장기계속공사 추진상황 점검결과, '24회계연도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75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증액 요청한 3교는 강당겸 체육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시설비(44억 1,700만원)와 내부비품비(3,400만원)를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57) (남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63(구로동)

158) 「강당 겸 체육관」 감액 요청 현황

- (서부)은평고, (남부)구일초, (북부)효문고, (강동송파)신암초, (강서양천)방화초

159)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반포동)

160) 「강당 겸 체육관」 증액 요청 현황

- (강동송파)천일초, (강남서초)서울웹툰애니고, (본부)세화여중

〈표 4-54〉 강당 겸 체육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설립별	학 교 명	총 소 요 액	기 확 보 액	추경증감액	향후소요액
합 계				33,169	16,792	△3,120	19,497
1	서 부	공 립	은 평 고	4,503	2,067	△869	3,305
2	남 부	공 립	구 일 초	4,262	4,228	△2,500	2,534
3	북 부	공 립	효 문 고	4,247	2,223	△1,014	3,038
4	강 동 송 파	공 립	신 암 초	4,054	3,002	△2,488	3,540
5	강 동 송 파	공 립	천 일 초	4,406	20	807	3,579
6	강 서 양 천	공 립	방 화 초	3,819	1,018	△700	3,501
7	강 남 서 초	공 립	서울웹툰애니고	4,332	3,898	434	-
8	본 부	사 립	세 화 여 중	3,546	336	3,210	-

○ 기타증축은 (강서양천)경인초¹⁶¹⁾ 특별교실 증축(4억 7,700만원), (강서양천)공진초¹⁶²⁾ 특별교실 증축(1억 5,500만원), (본부)건대부고¹⁶³⁾ 시청각실 증축(4억 8,0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임

- (강서양천)경인초의 경우, 특별교실 증축과 연계하여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¹⁶⁴⁾을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①특별교실 증축(4억 7,700만원) 및 ②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14억 9,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7,400만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61)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09(목동)

162)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33(마곡동 749-2)

163)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164)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내역)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사업별 설명자료 p.905)

〈표 4-55〉 경인초 특별교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학 교 명	준 예	공 정	사 업 내 역	총 소 요 액	기 획 보 액	추 증 감 액	향 소 요 액	후 액
강 서 양 천 교육지원청	경인초	'25. 1.		합 계	8,838	6,964	1,974		0
				① 특별교실 증축	3,099	2,622	477		0
				②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 증 축	5,839	4,342	1,497		0

- (강서양천)공진초, (본부)건대부고의 경우, 전액 목적지정재원(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11월, 교육부가 총 사업비 7억 7,300만원 중 특별교부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우선 교부하고 잔여금 6억 3,500만원은 '24년 1월중 분할 교부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으나,¹⁶⁵⁾ '23년 12월, 수정 통지를 통해¹⁶⁶⁾ 잔여금(6억 3,500만원)중 1억 4,600만원을 추가 교부하고 '23년 12월 19일, 서울시교육청으로 송금한 바,¹⁶⁷⁾
- 「지방재정법」¹⁶⁸⁾ 및 예산총칙¹⁶⁹⁾에 따라 '23회계연도중 성립전예산으로 이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종료를 위해 성립전 우선사용 확정을 '23년 12월 11일 마감함에 따라,¹⁷⁰⁾ '23회계연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16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098('23.11. 3), “2023년도 제3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서울)”

16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962('23.12.15), “2023년도 제3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수정통지(서울)”

167)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996('23.12.19), “2023년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차 송금 안내(서울)”

168)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16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170)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0702('23.12. 4), “2023년 성립전 우선사용 신청 마감 안내”

〈표 4-56〉 기타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소관부서	설립별	사 업 명	총 소 요 액	기 확 보 액	추경증감액	향후소요액
합 계				3,872	2,760	1,122	-
1	강서양천	공 립	경인초 특별교실 증축	3,099	2,622	477	-
2	강서양천	공 립	공진초 특별교실 증축 (안전학습공간조성)	189	34	155	-
3	본 부	사 립	건대부고 시청각실 증축	584	104	480	-

□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917, p.975, p.979, p.982)

○ **학교시설환경개선**의 경우, ①**노후시설개선**(2,033억 300만원), ②**노후교사 개축**(7억 3,3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③**그린스마트스쿨**(△155억 8,500만원)은 감액 요청하여, 기정예산보다 1,884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임

- 증액 편성 요청한(1,884억 5,100만원)은 일반재원 1,622억 1,8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262억 3,300만원(우선확정분 278억 9,900만원, 추경편성 △16억 6,6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 우선확정분 278억 9,900만원은 ①'24년 1월 교부된 '24년도 제1차('23년도 미교부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¹⁷¹⁾과 ②'24년 4월 교부된 '24년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¹⁷²⁾ 및 ③'24년도 공간재구조화사업 제1차 국고보조금,¹⁷³⁾ ④'24년 3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교육경비보조금¹⁷⁴⁾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중 예산총칙에¹⁷⁵⁾ 따라 성립전 우선사용

17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51('24. 1.10), “2024년도 제1차(2023년 미교부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

17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39('24. 4. 4), “2024년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

173) 교육부, 교육시설과-2278('24. 3. 4), “2024년 공간재구조화사업 국고보조금 1차 교부 결정 통지”

174)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4971('24. 3.22), “2024년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사업비 전출 알림”

17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9조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 목적지정재원중 추경을 통해 감액요청한 △16억 6,600만원은 「**도신초¹⁷⁶⁾ 학교시설 증축(증설)비용 기부채납 협약**」¹⁷⁷⁾에 따른 기타지원금으로 편성한 건설보조금(민간대행사업비)을 감액 요청 하는 것인 바, 당초 기부채납금액 납부 계획¹⁷⁸⁾에 따라 '24년 11월 납부될 예정이었으나,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BTL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¹⁷⁹⁾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4회계연도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액 전액을 감액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감액 편성요청한 △16억 6,600만원의 경우, 민간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 공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기타지원금으로 '24년도 본예산중 목적지정재원으로 편성된 것이나,¹⁸⁰⁾ 서울시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별 설명자료”¹⁸¹⁾에는 일반재원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안 제출시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176)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3길 32-9(대림동)

177) 「서울도신초등학교 학교시설 증축(증설) 비용 기부채납 협약서」('23. 8.11) 제2조(협약 내용)

178) 신길5동지역주택조합-088호('23. 9. 8), “사업추진 일정 및 기부채납금액 납부계획 회신”

2) 기부채납금액 (금5,553,000,000원) 납부 계획

① 1차 (채납금액의 1/3) : 2024년 11월 예정 *1,665,900천원

② 2차 (채납금액의 1/3) : 2025년 11월 예정

③ 3차 (채납금액의 1/3) : 2025년 11월 예정

179) ■ (가칭)그린스마트스쿨 주식회사-20230908-001호('23. 9. 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동구로초 외 1교(도신초)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존사업자 포기서 제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3120('24. 6. 3),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통보”

18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836

18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975

〈표 4-57〉 학교시설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기 정 예 산	추경예산안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재원(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668,744	857,195	188,451	162,218	27,899	△1,666
① 노 후 시 설 개 선	583,303	786,607	203,303	178,759	24,544	-
② 노 후 교 사 개 축	22,174	22,907	733	733	-	-
③ 그 린 스 마 트 스 쿨	63,265	47,680	△15,585	△17,274	3,335	△1,666
(꿈 담) 디 자 인 혁 신	20,100	20,100	-	-	-	-
적 정 규 모 육 성 학 교 교 육 환 경 개 선	490	490	-	-	-	-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노후시설개선**¹⁸²⁾은 화장실개선 공사를 포함한 17개 사업내용, 928건의 물량에 대해 2,03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 **화장실개선**의 경우, ①이·불용액을 감소시키고자 '24년도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액(△87억 1,800만원)하고, ②기 편성사업 부족분 등을 증액(44억 6,800만원)하였으며, ③남녀공학 전환 지원¹⁸³⁾에 따른 화장실개선 사업비를 증액(43억 9,300만원)하고자 소요예산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임

182) 노후시설개선 내역

- 교육환경개선사업(11개)* : 화장실개선, 전기시설개선, 냉난방개선, 창호개선, 외벽개선, 소방시설개선, 방수공사, 바닥개선, 도장공사, 외부환경개선, 기타사업
- 안전관리(5개) : 내진보강, 샌드위치판넬제거, 드라이비트해소, 석면제거, 정밀점검
- 장애인편의시설(1개)

* **교육환경개선사업(11개)중 10개 사업(기타사업 제외)**은 「2024~2026년 교육환경 대상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공개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내용연수 경과여부, 노후도, 동시 진행 필요성 등을 현장 실사에 기초하여 학교별-분야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개하고 있음

183)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4. 4. 1),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 발표」

- 다만, 남녀공학 전환 지원에 따른 화장실개선 사업비의 경우, 서울의료 보건고¹⁸⁴⁾ 본관 화장실개선(1억 9,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2억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까지 확정된 사업내역 없이 ‘사립학교 남녀공학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포괄 편성요청 한 것인바, 향후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된 학교에 대해 차등 지원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업 대상 및 물량이 산출되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편성 요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편성요청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기시설개선**의 경우, ①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를 감액 조정(△6억 4,600만원)하고, ②노후분전반 등 안전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101억 100만원)하였으며, ③LED 조명기기 보급을 위해 38억 3,700만원을 증액 하여, 총 13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지난 ’13년 6월 개정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¹⁸⁵⁾ 은 ’20년도까지 공공기관에 LED 조명을 100% 보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지난 ’16년 5월, ‘LED 조명기구 렌탈 사업(’17~’23)’¹⁸⁶⁾을 도입하여 사업 종료(’23. 9월)시까지 LED 조명 기구를 84.2% 보급하였으나, 석면교실,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건축물, 소규모 학교, 렌탈사업 미희망 학교의 경우에는 LED 조명을 보급하지 못하였으나 사업 효율성과 LED 조명 신속보급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소요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임¹⁸⁷⁾

184)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37길 30(만리동1가)

18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설치비율)	30%	45%	60%	100%	-
기존 건축물(교체비율)	40%	50%	60%	80%	100%

18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3324(’16. 5.24), “LED조명기구 설치사업 추진계획안”

18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794(’24. 3.12), “LED렌탈사업 종료에 따른 LED조명기구 보급 계획안”

- 다만, LED 렌탈사업의 경우, 보급학교에 대해 매년 에너지 절감액을 학교 운영비를 공제(감액)하고 있으나,¹⁸⁸⁾ 재정사업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액에 대한 공제없이 LED 조명기구를 보급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 간의 형평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냉난방개선**의 경우, ①이·불용액 감소를 위해 '24년도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액(△33억 6,700만원)하고, ②연계사업(석면해체) 실시 및 사업비 부족분, 항공소음피해학교 대상 사업비 등을 증액(189억 2,600만원)하여, 총 15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소방시설개선**의 경우, ①불용예산 사업비를 감액(△1억 4,000만원)하고, ②스프링클러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등을 위해 56억 6,300만원을 증액한 바, ③'23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집단급식소(학교해당)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화¹⁸⁹⁾됨에 따라, 각급학교의 급식실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자 5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 한 것으로 확인됨¹⁹⁰⁾
- **안전관리(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석면제거)**는 81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나,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업시기 재조정, 학교 미희망 등의 사유로 이·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인 바,¹⁹¹⁾ 예산편성 시

188) ■ 학교별 공제금액(1~4차년도 LED렌탈사업)

(단위 : 백만원)

학교수	상환기간	총 상환금액	'18	'19	'20	'21	'22	'23	'24	'25이후
838교	10년	35,004	73	1,140	1,631	2,280	2,574	2,924	3,445	20,934

- LED 조명기구 렌탈용역 사업(서울특별시, 교육시설안전과-8578, '17.10.11) :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사업비는 형광등에서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절감액을 운영비에서 일부를 선공제하여 10년간 장기상환하며,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는 사업

189)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467('24. 5.16),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 안내”

19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388('24. 2.29), “교육시설 급식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계획 알림”

191) 2023~2021년 안전관리(내진보강, 드라이비트해소, 석면제거) 사업 이·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2022		2021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	불용액	이월액	불용액
안전관리(내진보강)	28,389	21,155	24,209	21,131	24,289	8,000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43,626	21,054	24,095	4,753	8,194	3,026
안전관리(석면제거)	47,476	5,552	2,119	1,339	10,928	2,051

부터 사업추진 가능성 및 이·불용액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내 지출가능한 규모로 소요재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타사업**은 주요 시설분야¹⁹²⁾에 속하지 않는 사업으로써 학교별 다양한 환경개선 수요 및 현안사항(학생 안전 및 학습권 관련)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①안전시설개선(계단, 난간 등) 66억 7,600만원, ②친환경 운동장(마사토)조성 15억 7,900만원, ③GHP배출 가스 저감장치부착 7억 200만원, ④재개교학교 현안사업 2억 2,200만원 등 42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19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2627('23. 2.24), “2024~2026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안”
< 주요 시설사업 분야(11개 사업) >

①화장실 - 전면 개선	②전기시설 - 수배전시설 - 방송장비	③냉난방 - EHP - GHP	④창호 - 외부창호 - 교실출입문 - 중연창	⑤외벽 - 치장벽돌 - 판넬, 석재 - 타일 - 미장(몰탈)	⑥소방시설 - 기계실 - 옥내소화전 - 전기소방 - 소방내진
⑦방수 - 옥상방수	⑧바닥 - 목재후로링 - 비닐계열	⑨도장 - 외부도장 - 내부도장	⑩외부환경 - 배수로 - 축대 - 담장, 포장	⑪급식시설 - 급식실 - 학생식당	

〈표 4-58〉 노후시설개선 사업내역별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사 업 내 역	기 정 예 산	(추경증감) 물 량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재원(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583,303	928	203,303	178,759	24,544	-
화 장 실 개 선	61,825	28	143	143	-	-
전 기 시 설 개 선	10,255	152	13,293	13,153	140	-
냉 난 방 개 선	68,329	62	15,559	15,559	-	-
창 호 개 선	12,118	32	8,751	8,289	462	-
외 벽 개 선	14,712	15	5,030	4,126	904	-
소 방 시 설 개 선	11,755	31	6,043	5,973	70	-
방 수 공 사	21,717	89	9,910	8,118	1,792	-
바 닥 개 선	12,856	26	△204	△1,598	1,394	-
도 장 공 사	5,104	16	△204	△395	191	-
외 부 환 경 개 선	6,059	39	3,055	2,446	609	-
기 타 사 업	154,081	186	42,107	23,510	18,597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17,510	36	3,703	3,318	385	-
안전관리(내진보강)	87,397	1	6,192	6,192	-	-
안전관리(샌드위치판발거)	1,474	71	8,636	8,636	-	-
안전관리(드라이비트해소)	10,541	97	41,690	41,690	-	-
안전관리(정밀점검)	24,684	44	5,881	5,881	-	-
안전관리(석면제거)	62,881	3	33,718	33,718	-	-

- **노후시설개선**중 ‘사업비 부족분’을 사유로 증액편성 요청한 사업이 89건 144억 9,800만원으로 확인됨

-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업내역별 기준단가¹⁹³⁾에 따라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요청한 사업의 경우, ‘현장실사 결과 물량 추가, 물가 인상 및 공기 연장, 기타 현장 사정 등’의 사유로 기편성된 예산의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는 것인 바,
- 연도말까지 집행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으나, 기준단가에 따라 편성·집행하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요청 사업의 경우에는 증액 요청의 타당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59〉 사업비 부족분을 사유로 증액 편성 요청 사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사 업 명	기 정 예 산 (A)	추 경 예 산 안		재 원	증 감 사 유
		증 감 액 (B)	계 (A+B)		
합 계 (8 9 건)	17,474	14,498	31,972		
성동공고 창조관 방수공사	325	770	1,095	일반재원	사업비 부족
가원중 급식실리모델링및기타공사	323	763	1,086	일반재원	사업비 부족
송신초 본관 동 냉난방개선	160	619	779	일반재원	사업비 부족
월촌중 교사동 화장실개선	1,250	590	1,840	일반재원	특교부족분
서정초 본관 샌드위치판넬제거	108	426	534	일반재원	사업비 부족
창덕여고 교사동 화장실보수	613	409	1,022	일반재원	특교부족분
효문고 석면외벽 마감재개선 및 기타공사	519	390	909	일반재원	사업비 부족
이수초 교사드라이비트해소	1,094	380	1,474	일반재원	사업비 부족

※ 추경 증감액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193) 「2024~2026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기준단가」중 일부발췌

· 화장실(전면) m²당 2,650천원(40m²이하) ~ 2,610천원(80m²초과) · 방수 실당 12,500천원
· 전기시설(수배전) 172,000천원(950kW기준), (방송장비) 42,000천원(시청각실) ~ 90,000천원(방송실)
· 냉난방(전면) 실당 9,090천원(GHP→GHP), 9,760천원(EHP→GHP) · 외벽 실당 19,220천원

□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별 설명자료, p.901 p.905, p.1097, p.1099)

- **학교급식환경개선**의 경우, ①**급식시설개선**(77억 4,200만원), ②**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68억 900만원), ③**신규학교 조리기구구입**(10억 7,0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④**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3,300만원)은 감액 요청하여, 기정예산보다 155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는 것임

- 증액 편성 요청한 155억 8,900만원은 일반재원 138억 7,000만원과 목적지정재원 17억 1,900만원(우선확정분)으로 제출된 바, 우선확정분은 '24년 1월 교부된 '24년도 제1차('23년도 미교부액) 특별교부금¹⁹⁴⁾으로 ㉠용화여고¹⁹⁵⁾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9억 2,800만원), ㉡대광중¹⁹⁶⁾ 조리실 전면보수(4억 6,800만원) 및 ㉢회경중¹⁹⁷⁾ 조리실 전면보수(3억 2,300만원) 확인됨

〈표 4-60〉 학교급식환경개선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세 부 사 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A+B)	일반재원 (A)	목적지정재원(B)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85,646	101,235	15,589	13,870	1,719	-
①	급 식 시 설 개 선	42,496	50,239	7,742	6,951	791	-
②	급 식 실 및 학 생 식 당 신 증 축	16,850	23,659	6,809	5,881	928	-
③	신 규 학 교 조 리 기 구 구 입	5,557	6,628	1,070	1,070	-	-
④	노 후 조 리 기 구 교 체 및 확 충	20,740	20,707	△33	△33	-	-

19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151('24. 1.10), “2024년도 제1차(2023년 미교부액)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

195)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61(상계동)

196)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6(신설동)

197) (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8나길 20(회경동)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급식시설개선**은 **오륜초**¹⁹⁸⁾ 학생식당 조성(9억 2,800만원)을 포함한 18개 사업, 77억 5,500만원은 증액 요청하고, **상신중**¹⁹⁹⁾ 급식실 및 조리실 전면보수(특교부족분)는 불용액 감소를 위해 △1,300만원 감액 요청하는 것으로써 동 사업내용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24년 3월,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을 통해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107교)에 대해 '28년도까지 지하급식실을 해소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²⁰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호초**²⁰¹⁾와 **용답초**²⁰²⁾의 지하급식실 지상이전 사업비²⁰³⁾ 19억 1,3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은 '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양정중**²⁰⁴⁾ 조리기구 구입비를 전액 감액(△3,300만원) 요청한 것으로, 학교 급식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 학교법인의 양정고(자율형사립고)로 주조리교를 변경함에 따라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²⁰⁵⁾에 근거하여 시설사업비 지원이 제외되어 기편성된 예산을 감액 편성 요청 하는 것으로 확인됨

198)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96(방이동)

199) (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5길 61(신사동)

200)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4. 3.25),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발표」

: 조리종사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107교)의 지하급식실 해소 예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3464('24. 3.26),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알림”

201) (성동광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69(금호동2가)

202) (성동광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로25길 1(용답동)

203) 지하 급식실 지상이전 사업 추경 편성 내역 : 2교, 19억 1,300만원

(단위 : 백만원)

소관	학교명	사업내용	기정예산	추경예산	재원구분	증감사유
성동광진	금호초	급식실 지상이전	-	1,243	일반재원	지하급식실 지상이전
성동광진	용답초	급식실 지상이전	-	670	일반재원	지하급식실 지상이전

204)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39(목동)

205)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23. 6.)

4. 지원 제외 대상 : 사립초, 국제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되어있는 학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1] 교부금 산정기준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학교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은 경인초,²⁰⁶⁾ 명원초,²⁰⁷⁾ 청량중²⁰⁸⁾, 3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공사가 준공 예정('24년 10월, '25년 1월)됨에 따라 준공시기에 맞추어 조리기구를 확충하고자 1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1〉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편성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사 업 명	기 정 예 산 (A)	추 경 예 산 안		재 원	증 감 사 유
		증감액 (B)	계 (A+B)		
합 계 (3 건)	-	1,070	1,070		
경인초 에어커튼외 95종 구입	-	449	449	일반재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5. 1월 준공예정)
명원초 조리대외 69종 구입	-	325	325	일반재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4. 10월 준공예정)
청량중 식기세척기외 57종 구입	-	295	295	일반재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25. 1월 준공예정)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은 통상 공사기간이 2개 회계연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①'25년 8월 준공 예정인 신서중²⁰⁹⁾ 시설비는 이월액 감소를 위해 감액(△7억원) 요청하고, ②매봉초²¹⁰⁾ 외 15건은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설계비 및 시설비 등을 75억 900만원을 증액 요청하여 기정예산보다 68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것임

- 다만, ①**둔촌중**²¹¹⁾, ②**경인초**²¹²⁾의 경우 '25년도 1~2월중 준공예정으로 확인됨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소요예산 잔여액 전액을 편성 요청한

206)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09(목동)

207)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364(명일동)

208) (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01(청량리동)

209)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06(신정동)

210) (남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길 55(개봉동)

211)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향도로61길 25-30(둔촌동)

212) (강서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09(목동)

것으로 준공금 지급 시까지 예산의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일 수밖에 없어,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③동덕여고²¹³⁾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6억 9,000만원)의 경우, 지난 '23년 4월 '조리실 전면보수' 용도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것이나,²¹⁴⁾ '23년 12월, '조리실 전면보수'에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으로 사업변경을 요청하고,²¹⁵⁾ '24년 2월, 교육부로부터 사업변경이 승인되어²¹⁶⁾ '23년도에 불용한 특별교부금을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증액 편성 요청한 것이나

- 동덕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은 보수 공사를 신증축 공사로 변경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44억 5,900만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여 자체투자심사를 받아야 함에도²¹⁷⁾ '24년 6월 현재 이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²¹⁸⁾ 사전절차가 미이행사업²¹⁹⁾된 사안에 해당되어 편성요청된 소요예산(6억 9,000만원)은 삭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13)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길 123-5(방배동)

21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994('23. 3.31), “2023년도 제1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

215)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1695('23.12.28),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변경 요청”

21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78('24. 2.29),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집행 관련 검토결과 통보”

21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이하 생략)

■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심사

가.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이하 생략)

21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909

청별	학교명	재정투자심사(최종)		공유재산심의(최종)		설계	착공	준공
		자체	중앙	심의	관리계획			
본부	동덕여고	'24.9.26 (예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4. 10.	'25. 9.	'27. 2.

219)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표 4-62〉 동덕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부 서	학 교 명	착공예정	준공예정	총 소 요 액	기 확보액	추 증 경 감 액	향 후 소 요 액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동 덕 여 고	'25년 9월	'27년 2월	4,459	-	690	3,860

〈표 4-63〉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설립별	학교명	소요예산				준공예정
				총소요액	기확보액	추경증감액	향후소요액	
합계 (1 6 건)				53,375	14,053	6,809	32,602	
1	동부	공립	면동초	2,103	296	13	1,794	'25. 7월
2	남부	공립	매봉초	2,719	1,062	1,000	656	'25. 2월
3	북부	공립	누원초	2,334	-	115	2,219	'26. 7월
4	북부	공립	수락초	2,090	-	77	2,013	'25.12월
5	북부	공립	한천중	3,449	-	180	3,269	'27. 1월
6	강송동파	공립	①둔촌중	2,003	963	1,040	-	'25. 2월
7	강송동파	공립	석촌중	3,510	3,010	500	-	'24. 9월
8	강양서천	공립	②경인초	5,839	4,341	1,497	-	'25. 1월
9	강양서천	공립	신기초	3,122	-	348	2,774	'26.12월
10	강양서천	공립	목동중	3,815	23	212	3,580	'26.12월
11	강양서천	공립	신서중	3,702	1,193	△700	3,208	'25. 8월
12	강양서천	공립	월촌중	3,736	20	209	3,507	'26. 8월
13	강서남초	공립	반원초	4,342	19	30	4,293	'26. 7월
14	교육시설관리본부	사립	진선여중	3,515	3,126	389	-	'24. 8월
15	교육시설관리본부	사립	③동덕여고	4,459	-	690	3,769	'27. 2월
16	교육시설관리본부	사립	용화여고	2,637	-	1,207	1,430	'25.12월

⑤ 재무활동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p.885)

- 교육시설안전과 및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전출하고자 기금전출금 2,993억원을 신규편성 요청한 것임

〈표 4-64〉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안 (A + B)	최종예산
합	계	-	299,300	299,300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적립	-	299,300	299,300	-

- 지난 '23년도의 경우,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 220)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한 기금전출금 2,315억원 전액을 미전출(불용)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해당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2,99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동 사업내용의 경우, 세부사업명은 “**기금전출금**”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라는 사업내용만으로는 해당 기금을 운용하는 것인지 기금전출금을 편성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물론 교육부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에는 사업명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훈령 제 29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별표10에 따른 사업명칭 부여기준²²¹⁾을 적용하고 있는 바,

220)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604('23. 9.2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
-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예정 통보('23. 9.21)에 따라 기금전출금 등의 미집행을 통해 세출예산 절감 추진

- 동 기준에는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내용이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명시한 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명칭보다는 사업내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목적지정재원 증액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회계연도중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목적지정재원은 4,654억 2,20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1조 2,881억 3,100만원)중 36.1%에 해당함

〈표 4-65〉 목적지정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편 성 재 원	증 감 액
합 계		465,422
①우선확정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 전입금	459,254
②추경편성	특별교부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 전입금	6,168

①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사업

- 목적지정재원으로 교부되어 우선확정된 사업은 187건, 4,592억 5,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²²²⁾ 및 예산서중 예산총칙²²³⁾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222)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22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 ①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표 4-66〉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합 계		187	459,254
중앙정부이전수입	특별교부금	155	228,786
	국고보조금	3	3,573
자치단체이전수입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4	133,136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	88,884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3	15
	전입금	4	4,85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6

- 초등교육과 소관 **디지털혁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²²⁴⁾**은 늘봄(방과후·돌봄·초1맞춤형)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4년 3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312억 8,0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①**늘봄학교운영비**는 '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시행예정인 국·공·사립 초등학교 605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3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②**늘봄학교운영지원**은 늘봄학교 '24년도 상반기 늘봄학교 우선 시행학교 136교와 지원청 1개청의 ㉠단기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행정인력 실무연수, ㉢서울형 늘봄학교 플랫폼(홈페이지) 구축²²⁵⁾ 등을 위해 9억 4,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22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05

22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8873('24. 5.13), “2024년 제2회 정보화사업실무협의회 검토 결과 알림”
- 기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늘봄학교지원센터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화사업실무협의 검토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사업별 설명자료에 따르면 ㉡늘봄학교운영지원 산출내역중 ㉣늘봄 학교 행정인력 실무 연수 운영비와 ㉣늘봄학교 플랫폼(홈페이지) 구축비를 ‘위탁용역비’로만 기재하고 있어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사업별 설명자료중 산출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67〉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경 예산	기정 예산	증감액	편성 내역
합		계		31,280	-	31,280	
		늘봄 운영 다양화 지원		1,742	-	1,742	○ 운영비: 8,852천원 ○ 업무추진비: 2,000천원 ○ 자치단체등이전: 720,000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1,011,600천원
		① 늘봄 학교 운영비		23,335	-	23,335	○ 늘봄학교 운영비: 19,947,900천원 ○ 늘봄학교 학급운영비: 363,000천원 ○ 늘봄학교 추가운영비: 3,025,000천원
		② 늘봄 학교 운영지원		941	-	941	○ 인건비(지원청): 5,051천원 ○ 운영비: 232,000천원 가. 사무용품비: 500천원 나. 원가조사비: 660천원 다. 위탁용역비(행정인력연수): 18,800천원 라. 위탁용역비(홈페이지구축): 197,740천원 마. 각종수당: 13,500천원 바. 행사용품비: 800천원 ○ 업무추진비: 8,000천원 ○ 민간이전(법정부담금): 564천원 ○ 학교회계전출금(인건비): 696,272천원
		늘봄 학교 홍보		301	-	301	○ 운영비: 301,380천원
		늘봄 학교 환경 개선 관리 지원		4,320	-	4,320	○ 학교회계전출금: 4,320,000천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638	-	638	○ 학교회계전출금: 638,381천원

○ 학교지원과 소관인 **교육공간총괄기획중 (가칭)에코스쿨조성**(생태환경교육파크)²²⁶⁾은 폐교(구 공진중²²⁷⁾)를 활용한 환경교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0억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것임

- (가칭)에코스쿨조성(생태환경교육파크) 총 사업비는 556억원으로 환경부·서울시·교육청·교육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²²⁸⁾ '24년 4월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0억이 교부되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지난 '24년 5월 가결됨에 따라²²⁹⁾ 에코스쿨 조성 비용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4-68〉 교육공간총괄기획(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추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편 성	내 역
합		계		4,000	-	4,000		
	에	코	스	쿨	조	성		○ 보전금 - 설계공모보상비 100,000천원×1식=100,000천원 ○ 건설비 - 시설비 3,900,000천원×1식=3,900,000천원

-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 중 동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별 설명자료에 기재된 추진기간²³⁰⁾을 종합하면 동 사업은 '24년 5월부터 '26년 12월까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26)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44

227) (강서양천)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5길 56(가양동)

228)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 p.83 ④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계획서, 재구성

■ 사업명: (가칭)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조성

■ 재원

(단위 : 백만원)

계	국고(환경부)	지자체전입금(서울시)	지방비(교육청)	교부금(교육부)
55,627	7,000	4,549	40,078	4,000

※ 총사업비 556억원 중 용지비* 329억원, 시설비 227억원인 것으로 확인됨

*용지비는 '21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폐교부지 활용에 따라 실제 매입비 미발생하였으나, 총사업비 중 교육청 재원에 포함됨(교육청 재원: 40,078백만원 = 용지비 32,883백만원 + 시설비 7,195백만원)

22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1797, 제출일 '24. 4. 3, '24. 5. 3 원안가결)

230)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44, Ⅲ.1.에코스쿨조성

■ 기간: 2024. 5. ~ 2026. 12.

- '24년도에는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와 실시설계가 추진될 것으로 확인되어²³¹⁾ 공정상 대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24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재원분담분 40억원 전액이 교부되어 금번 추경안에 편성요청한 것으로
- 2년 이상 장기공사의 경우,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는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무상급식**²³²⁾은 교육청(50%)·서울시(30%)·자치구(20%)와 소요예산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①서울시 무상급식 지원금 1,307억 5,700만원과 ②자치구 무상급식 지원금 881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89억 3,900만원을 우선확정²³³⁾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 **학교스포츠클럽운영**²³⁴⁾은 자율체육활동 활성화와 신체활동참여소외학생의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①365체육온활동 56억 7,400만원, ②학교스포츠클럽운영 30억원을 포함하여 총 86억 7,400만원을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그린스마트스쿨**²³⁵⁾은 국비와 지방비 3:7 매칭 사업으로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3억 5,500만원을 공립 2교(둔촌초²³⁶⁾, 위례초²³⁷⁾)에 대한 시설비로 우선확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23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45, IV.2.향후계획

■ (가칭)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 2024. 5. ~ 12.

23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73

233) 서울시와 자치구가 교육청으로 제출한 유치원 및 학교의 무상급식 자치단체 부담분중 1월~8월분

234)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760

23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979

236)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8길 27(둔촌동)

237)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3(둔촌동)

〈표 4-69A〉 주요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광역자치단체 전 입 금	학 교 급 식 운 영	친 환경 학교 급 식 비 (1 ~ 8 월)	130,757
기초자치단체 전 입 금	학 교 급 식 운 영	친 환경 학교 급 식 비 (1 ~ 8 월)	88,182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교육혁신)	방 과 후 학 교 운 영	디지털혁신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운영	31,280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교육혁신)	I C T 활용 교육 지원	A I D T 적 용 교 원 연 수 지 원	18,342
특 별 교 부 금 (지역 현 안)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기 타 사 업	17,690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I C T 활용 교육 지원	디 지 털 기 반 교 육 혁 신 지 원	11,464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 학 입 학 전 형 지 원	9,324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교육혁신)	정 보 보 안 관 리	디 지 털 인 프 라 지 원	8,783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각 종 체 육 활 동	학 교 스포츠 클럽 운영	8,674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교육혁신)	I C T 활용 교육 지원	찾 아 가 는 학 교 연 수 운 영	8,262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교육혁신)	I C T 활용 교육 지원	디 지 털 새 싹 운 영	7,760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교육혁신)	I C T 활용 교육 지원	A I D T 교 원 연 수 질 관 리 체 계 구 축	7,009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학 력 향 상 지 원	책 임 교 육 학 년 지 원	6,991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학 력 향 상 지 원	교 육 회 복 지 원	6,630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I C T 활용 교육 지원	S W 교 육 현 장 안 착 및 활 성 화	5,626
전 입 금	학 력 평 가 관 리	전 국 연 합 학 력 평 가 실 시	4,739

〈표 4-69B〉 주요 목적지정재원 우선확정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학 력 향 상 지 원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지원	4,322
특 별 교 부 금 (지 역 현 안)	시 설 사 업 운 영	교 육 공 간 총 괄 기 획	4,000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교육혁신)	교 원 연 수 운 영	디 지 털 기 반 교 육 연 수	3,900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돌 봄 교 실 운 영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지 원	3,668
국 고 보 조 금	학교시설환경개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3,355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학 생 맞 춤 통 합 지 원 체 계 구 축	2,902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학 력 향 상 지 원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2,771
특 별 교 부 금 (국 가 시 책)	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다 문 화 탈 북 학 생 지 원	2,540

※ 우선확정액 25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② 목적지정재원 추가경정예산편성

○ 목적지정재원중 우선확정을 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사업은 **교특예산편성** 등 11건, 61억 6,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소관 **영어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²³⁸⁾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중학교 26교²³⁹⁾)하기 위하여 자치구(마포구, 종로구, 중구, 서초구) 지원금 12억 1,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²⁴⁰⁾과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²⁴¹⁾은 학교폭력업무담당자 연수, 행정전담인력 심리치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교육부 특별교부금(국가지책) 39억 9,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임
- 학교지원과 소관 **교실증축**²⁴²⁾은 지역 재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증축비용으로 고덕초²⁴³⁾ 교실증축비(모듈러 임차료, 시설비, 모듈

238)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499

239) 2024학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중학교 명단(4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명	지원청명	학교명	연번	자치구명	지원청명	학교명
1	마포구 (4교)	서부	서울여자중학교	15	서초구 (12교)	강남서초	동덕여자중학교
2			신수중학교	16			방배중학교
3			아현중학교	17			서운중학교
4			중암중학교	18			서일중학교
5	중구 (7교)	중부	대경중학교	19			서초중학교
6			덕수중학교	20			세화여자중학교
7			창덕여자중학교	21			신동중학교
8			장원중학교	22			신반포중학교
9			장충중학교	23			언남중학교
10			한양중학교	24			영동중학교
11			환일중학교	25			원촌중학교
12	종로구 (3교)	중부	배화여자중학교	26			이수중학교
13			중앙중학교				
14			청운중학교				

240)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655

24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664

242)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850

243)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2길 42(고덕동)

리 설계비) 시공사 지원금 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4-70〉 목적지정재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편 성 액	비 고
합 계 (1 1 건)			6,168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예 산 관 리	교 특 예 산 편 성	43	예산편성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SW구입
특 별 교 부 금	교 원 연 수 운 영	교 원 의 교 육 전 념 여 건 및 연 수 체 제 개 선	6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개발체제 지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영 어 원 어 민 인 건 비 및 제 경 비	1,210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지원금(4개구, 중26교)
기초·광역자치단체전입금	평 생 교 육 시 설 및 운 영	평 생 교 육 시 설 지 원	29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비 증액(4교)
특 별 교 부 금	학 교 폭 력 예 방 및 교 육	학 교 폭 력 사 안 처 리 지 원	3,716	학 교 폭 력 사 안 처 리 및 학 교 폭 력 예 방 교 육 지 원 비 추 가 교 부
		학 교 폭 력 예 방 교 육 지 원	274	
특 별 교 부 금	직 업 교 육 개 선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220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비 지원
특 별 교 부 금	특 수 교 육 운 영	장 애 유 형 별 맞 춤 형 교 육 지 원 강 화	60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비 추가교부
기 타 지 원 금	학 교 신 증 설	교 실 증 축	2,000	지역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한 교실증축비 등 편성
전 입 금	지 방 공 무 원 연 수 운 영	전 문 교 육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위탁교육훈련 운영비

(3) 기타

□ **반환금** (사업별 설명자료, p.114)

○ 예산담당관 소관 **반환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²⁴⁴⁾에 따라 '23년도 외부재원(국고보조금,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기타지원금 등)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60억 4,1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① **학교급식(광역)** 및 ② **학교급식(기초)**는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학교급식운영²⁴⁵⁾에서 발생한 집행잔액²⁴⁶⁾에 대해, 서울시 보조금 43억 1,300만원과 자치구 보조금 28억 9,900만원을 반환하고자 반환금을 편성요청한 것임

■ 다만, 사업부서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①급격한 학생수 감소 및 ②예산 편성단가와 실제 지원단가의 차이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²⁴⁷⁾, 매년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244)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23. 8)

■ [별표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제5조제1항 관련)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01]예비비및기타			
	[01]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및 기타
		[01]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02]제지출금등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
		[03]내부유보금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

245)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8935('22.10.26), “2023년 학교급식비 예산 편성 계획 조정(안)”

246) 학교급식운영 반환금 편성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학교				유치원			
		계	식품 관리비	시정조치 반납액	인건비	계	식품관 리비	시정조치 반납액	인건비
합계	7,212	7,026	2,324	40	4,661	186	40	48	97
광역	4,313	4,201	1,380	24	2,796	111	24	29	58
기초	2,899	2,824	943	16	1,864	74	16	19	39

24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재원분담 비율만큼 급식비보조금을 편성하고²⁴⁸⁾ 있는 바,

- 서울시교육청의 부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결과와 연동될 수밖에 없고, 다른 자체단체의 지방재정의 한정성까지 일부나마 잠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교급식운영을 위한 산출기초를 정밀하게 개선하여 향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 편성규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71〉 주요 반환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금 액	반 납 기 관
참 여 협 력 담 당 관	입학준비금(광역)	652	서울시
	입학준비금(기초)	500	자치구
	학교학습공간시설개선지원(22년)	470	서울시
유 아 교 육 과	유아보육료	5,036	교육부
	유아학비	489	교육부
중 등 교 육 과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지원	141	서울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174	자치구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대안교육기관지원	741	서울시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학교흡연예방사업	101	보건복지부
	①학교급식(광역)	4,313	서울시
	②학교급식(기초)	2,899	자치구

248)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8935('22.10.26), “2023년 학교급식비 예산 편성 계획 조정(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합계	889,000	100	- 재원 분담비율 ^{주1)} 과 실제 분담 비율 차이 발생사유: 서울시와 자치구에 분담하고 있는 공립학교 조리(실무)사 인건비 일부를 2023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주1) 협약 분담비율: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분담액	교육청	545,620	
	서울시	206,027	
	자치구	137,351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금 액	반 납 기 관
교 육 시 설 안 전 과	특별교육경비(23년)	289	서울시
	꿈을담은교실만들기(22년)	144	서울시

※ 1억원 이상 증액편성한 사업으로 한정함
※ 자료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p.30

2. 세출예산 감액 관련

□ 내부유보금 (사업별 설명자료, p.105)

- **내부유보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편성한 △486억 4,200만원 전액을 감액요청한 것임

〈표 4-72〉 내부유보금 감액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세 부 사 업	기 정 예 산 (A)	추 경 예 산 안 (B)	추 가 경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증 감 액 (C = B - A)	증 감 륜 (C / A)
내 부 유 보 금	48,642	0	△48,642	△1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580('23. 3.22)

- **내부유보금**은 '24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중 삭감된 △486억 4,200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당 재원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유보금에 대한 경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공무직노무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156)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직노무관리**는 사업내용중 ①**교육공무직채용관리**에 대해 3,400만원을 증액하고, ②**교육공무직퇴직연금관리**는 △7,0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함에 따라 기정예산(16억 5,600만원) 보다 △3,500만원을 감액된 16억 2,100만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 ①**교육공무직채용관리**는 늘봄전담인력 등 채용 대상 근로자가 증가하여 시험수당, 채용시스템 운영비가 증가하여 3,400만원을 증액요청하고,

- ②교육공무직퇴직연금관리는 '24년 4월, 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 직종)의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집행²⁴⁹⁾한 이후 발생한 집행잔액 △7,000만원을 감액요청한 것임

〈표 4-73〉 교육공무직노무관리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도			2023년도
		기정예산 (A)	추경증감 (B)	추경예산 (A + B)	최종예산
합	계	1,656	△35	1,621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25	-	25	
	교육공무직원정기전보	2	-	2	
	① 교육공무직원채용관리	598	34	633	
	② 교육공무직원퇴직연금관리	785	△70	715	
	교육공무직인사운영	151	-	151	
	노무관리연수	31	-	31	
	노무관리운영	61	-	61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156

□ 급식종사자건강관리 (사업별 설명자료, p.1091)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급식종사자건강관리**는 기정예산액(1억 5,000만원)중 4개 사업내용에 대해 증·감 조정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으로 소요예산을 경정요청한 것임

249)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납부 내역

합계	국민은행	신한은행
714,417,780원	367,950,710원	346,467,070원

〈표 4-74〉 급식종사자건강관리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A + B)
합	계	150	△30	120
운	영 비	150	△149	1
	폐 암 검 진 비 지 원	150	△150	-
	폐암검진비지원(행정기관)	-	1	1
학	교 회 계 전 출 금	-	119	119
	폐 암 검 진 비 지 원 (공 립)	-	79	79
	폐 암 검 진 비 지 원 (사 립)	-	40	40

※ 자료근거 :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216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091

- 동 사업은 급식종사자의 폐암 건강검진을 위하여 '24년 2월부터 12월까지 1차 검진비와 2차 검진비(1차 검진자 중 추적관찰 필요 수검자)를 지원하는 것²⁵⁰⁾으로,
- '24년 5월 현재 폐암 검진비 신청 접수 결과, 당초 예상 인원(850명) 보다 신청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 인원수를 600명으로 변경하여 소요예산도 △3,000만원 감액요청한 것임
- 아울러 당초에는 급식종사자 폐암건강진단 지원예산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경정요청한 바,
- 지난 '22년도 사업추진시부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기에 '24년도 본예산에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어야 하나

250) 서울시교육정보건강안전진흥원, 산업안전보건지원과-84('24. 2. 2), “2024년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계획(안)”

- '23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24년 본예산 편성시 소관부서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²⁵¹⁾과 교육부의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²⁵²⁾을 잘못 해석하여 운영비로 편성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급식중사자에 대한 폐암 검진이 '24년 2월부터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가 예산과목을 부적절하게 편성함으로써 지난 '23년 12월 15일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사업부서의 실책을 단순히 운영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추경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사업주체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일 수 있어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별 설명자료, p.1097)

- 보건안전진흥원 소관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조리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 597교를 대상으로 예산 배정하였으나, 사립중 1교가 급식 운영방식을 변경²⁵³⁾함에 따라 기정예산액(207억 4,000만원) 보다 △3,300만원을 감액편성 요청한 것임

251)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6조(학교예산의 전출 및 보조)

- ① 교육감과 교육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의 장은 학교별로 전출금의 교부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전출 및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간 격차 해소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본청,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각 과장**은 제1항의 교부 기준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로 알리고, 당해 예산 범위 안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전출금(보조금)교부통지서로서 예산을 교부한다.(이하 생략)

252) 교육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23. 8) p.21

- 학교회계전출금: 학교 재정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최소화**, 학교 운영비 총액 지원 확대 등 편성 권고

253) ■ 대상: 양정중학교(양천구 안양천로 1039)

- 변경내용: 주조리교를 자사고로 변경하는 급식 운영방식 변경

〈표 4-75〉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도			2023년 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A + B)	최 종 예 산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20,740	△33	20,707	22,572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336

□ 학교시설관리운영 (사업별 설명자료, p.1117)

○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학교시설관리운영**은 기정예산액(289억 5,200만원)보다 △4.8%, △14억원을 감액한 275억 5,200만원으로 경정요청한 것임

- “학교시설관리 인력 운용 개선 계획”²⁵⁴⁾에 따라 제3섹터 용역을 통해 학교시설관리 근로자를 배정²⁵⁵⁾하는 바, '24년도 본예산에 654교, 694명을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휴교 및 학급수 감축에 따라 배정인원을 643교, 679명으로 감축하고, '24년도 퇴직금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용역비 △14억원에 대해 감액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76〉 학교시설관리운영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도			2023년 도
	기 정 예 산 (A)	추 경 증 감 (B)	추 경 예 산 (A + B)	최 종 예 산
제3섹터방식용역비	28,952	△1,400	27,552	24,747

※ 자료근거 :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p.514

25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9607('19. 7.19), “학교시설관리 인력 운용 개선”

255) 최근 5년간 학교시설관리 제3섹터 용역 운영학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계		초		중		고·각종·특수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학교수	인원
2024	643	679	405	419	166	168	72	92
2023	597	637	376	394	160	164	61	79
2022	473	484	317	321	125	130	31	33
2021	249	249	172	172	61	61	16	16
2020	111	112	77	77	27	28	7	7

V. 예산안 첨부서류 관련

- 「지방재정법」 256)에는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²⁵⁷⁾을 통해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성과계획서 및 성인지 예산서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 등의 제출여부는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사료되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²⁵⁸⁾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256)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별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5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58) 교육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3. 8.)

- 성과계획서 보완 및 변경

- 추경예산 등 예산변경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단서조항은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으로만 인식하기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나 제출의 실익이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4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2조 4,486억 6,800만원)이 기정예산(11조 1,605억 3,600만원)보다 11.5%, 1조 2,88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정하게 되면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방재정법」 259)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2024년~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에는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하여 '24년도 재정규모를 수정하고, 기금수입 전망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추가하여 중기 기금수입 및 지출 전망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됨

- 2024~2028년 **중기 재정규모**는 73조 6,110억원으로 당초 규모(73조 1,112억 8,000만원)보다 4,997억 9,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259)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교육비 특별회계**는 당초 규모(66조 444억 400만원) 보다 3,666억 400만원이 증가된 66조 4,110억 800만원이며
- **기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추가하고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과 ‘생태전환교육기금’ 일부를 수정하여 당초 규모(7조 668억 7,600만원) 보다 1,331억 8,700만원이 증가한 7조 2,000억 6,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표 5-1〉 재정규모(총계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재정규모	계 획 기 간					연평균 증가율
			2024	2025	2026	2027	2028	
변 경	계	73,611,071	14,763,011	14,488,811	14,424,251	14,903,653	15,031,345	0.5
	교특회계	66,411,008	12,636,017	12,769,606	13,282,513	13,697,483	14,025,389	2.6
	기 금	7,200,063	2,126,994	1,719,205	1,141,738	1,206,170	1,005,956	△ 17.1
기 정	계	73,111,280	14,340,907	14,460,171	14,408,036	14,887,614	15,014,552	1.2
	교특회계	66,044,404	12,269,413	12,769,606	13,282,513	13,697,483	14,025,389	3.4
	기금	7,066,876	2,071,494	1,690,565	1,125,523	1,190,131	989,163	△ 16.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p.2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2028 중기서울교육재정변경계획(안)」 p.23

Ⅵ. 참고자료

〈표 6-1〉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금 액	비 율		증 감 액	비 율	일 재 반 원	목 적 지 정	
									추 경	우선확정
합 계			12,448,668	100.0	11,160,536	1,288,132	11.5	822,710	6,168	459,254
중앙 정부 이전 수입	계		6,801,713	54.6	6,550,078	251,635	3.8	14,999	4,276	232,360
	보 통 교 부 금		5,918,437	47.5	5,903,438	14,999	0.3	14,999	0	0
	특 별 교 부 금		233,062	1.9	0	233,062	순증	0	4,276	228,786
	증 액 교 부 금		176,123	1.4	176,123	0	0.0	0	0	0
	국 고 보 조 금		23,370	0.2	19,796	3,574	18.1	0	0	3,574
	특별회계전입금		450,721	3.6	450,721	0	0.0	0	0	0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계		4,380,853	35.2	4,072,173	308,680	7.6	85,107	1,551	222,022
	법 정	소 계	4,117,566	33.1	4,032,459	85,107	2.1	85,107	0	0
		지 방 교 육 세	1,808,657	14.6	1,811,356	△2,699	△0.1	△2,699	0	0
		담 배 소 비 세	263,848	2.1	257,277	6,571	2.6	6,571	0	0
		시 도 세	1,901,000	15.3	1,817,974	83,026	4.6	83,026	0	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1,988	0.0	1,988	0	0.0	0	0	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5,070	0.9	116,861	△1,791	△1.5	△1,791	0	0
		교육급여보조금	10,491	0.1	10,491	0	0.0	0	0	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6,512	0.1	16,512	0	0.0	0	0	0
	비 법 정	소 계	263,287	2.1	39,714	223,573	563.0	0	1,551	222,022
		광역자치단체	149,307	1.2	15,914	133,393	838.2	0	256	133,137
		기초자치단체	113,980	0.9	23,800	90,180	378.9	0	1,295	88,885
기 타 이 전 수 입			17,121	0.1	11,487	5,634	49.0	421	341	4,872
자 체 수 입	계		144,320	1.2	134,517	9,803	7.3	9,803	0	0
	교수학습활동수입		1,544	0.0	1,521	23	1.5	23	0	0
	행 정 활 동 수 입		5,597	0.1	5,597	0	0.0	0	0	0
	자 산 수 입		13,522	0.1	8,875	4,647	52.4	4,647	0	0
	이 자 수 입		22,480	0.2	11,819	10,661	90.2	10,661	0	0
	기 타 수 입		101,177	0.8	106,705	△5,528	△5.2	△5,528	0	0
기 타	계		774,661	6.2	62,281	712,380	1,143.8	712,380	0	0
	전 년 도 이 월 금		764,529	6.1	61,451	703,078	1,144.1	703,078	0	0
	금 용 자 산 회 수		10,132	0.1	830	9,302	1,120.7	9,302	0	0
내부거래(기금전입금)			330,000	2.7	330,000	0	0.0	0	0	0

〈표 6-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일 반	목 적 지 정	
							재 원	우선확정	추경편성
합 계	12,448,668	100.0	11,160,536	100.0	1,288,131	11.5	822,709	459,254	6,168
유아및초중등교육	6,036,176	48.5	5,049,336	45.2	986,840	19.5	542,150	438,862	5,827
인적자원운용	73,207	0.6	66,340	0.6	6,866	10.4	1,154	5,699	13
교수학습활동지원	1,012,619	8.1	619,158	5.5	393,460	63.5	249,404	138,576	5,480
교육복지	896,752	7.2	748,977	6.7	147,775	19.7	103,248	44,527	-
보건급식	776,034	6.2	538,180	4.8	237,854	44.2	16,183	221,671	-
학교재정지원관리	2,317,603	18.6	2,318,063	20.8	△460	△0.0	△460	-	-
학교시설여건개선	959,959	7.7	758,616	6.8	201,343	26.5	172,621	28,388	334
평 생 교 육	31,924	0.3	30,626	0.3	1,298	4.2	△871	1,872	297
평 생 교 육	31,924	0.3	30,626	0.3	1,298	4.2	△871	1,872	297
교 육 일 반	564,538	4.5	237,394	2.1	327,143	137.8	308,580	18,519	43
교육행정일반	189,982	1.5	165,240	1.5	24,741	15.0	6,873	17,824	43
기관운영	74,509	0.6	72,102	0.6	2,407	3.3	2,407	-	-
재무활동	300,046	2.4	52	0.0	299,994	576,913.2	299,300	694	-
예 비 비	36,041	0.3	68,642	0.6	△32,601	△47.5	△32,601	-	-
예비비및기타	36,041	0.3	68,642	0.6	△32,601	△47.5	△32,601	-	-
인 건 비	5,779,987	46.4	5,774,536	51.8	5,450	0.1	5,450	-	-
인 건 비	5,779,987	46.4	5,774,536	51.8	5,450	0.1	5,450	-	-

〈표 6-3〉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내 역		재 원 구 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일 재 반원	목 적 지 정	
										우 확	선 정
합 계			12,448,668	100.0	11,160,536	100.0	1,288,131	11.5	822,709	459,254	6,168
인건비	계		7,101,059	57.1	7,095,608	63.5	5,450	0.0	5,450	0	0
	공무원인건비		4,628,067	37.1	4,609,044	41.2	19,023	0.4	19,023	0	0
	교육공무직원 및 계약제 교직원		1,151,919	9.2	1,165,491	10.4	△13,572	△1.1	△13,572	0	0
	사립학교인건비		1,321,071	10.6	1,321,071	11.9	0	0.0	0	0	0
경상비	계		1,036,111	8.3	1,036,278	9.2	△166	0.0	△166	0	0
	교육행정기관 기관 운영비		39,579	0.3	39,286	0.3	293	0.7	293	0	0
	학교 운영비	소 계	996,531	8.0	996,991	8.9	△460	0.0	△460	0	0
		공 립	745,649	5.9	745,649	6.6	0	0.0	0	0	0
		사 립	250,882	2.0	251,342	2.2	△460	△0.1	△460	0	0
사업비	계		3,975,409	31.9	2,959,955	26.5	1,015,454	34.3	550,726	458,559	6,168
	교 육 사 업 비		2,879,286	23.1	2,082,878	18.6	796,407	38.2	362,121	428,452	5,834
	시 설 사 업 비	소 계	1,096,123	8.8	877,077	7.8	219,046	24.9	188,605	30,107	334
		학 교 신 증 설	59,222	0.4	44,322	0.3	14,899	33.6	12,899	0	2,000
		일반시설	935,666	7.5	747,109	6.6	188,557	25.2	161,835	28,388	△1,665
		급식시설	101,234	0.8	85,645	0.7	15,589	18.2	13,870	1,719	0
재 무 활 동	계		300,046	2.4	52	0.0	299,994	5769131	299,300	694	0
	지방채상환등		52	0.0	52	0.0	0	0.0	0	0	0
	B T L 상 환		694	0.0	0	0.0	694	순증	0	694	0
	기금전출금		299,300	2.4	0	0.0	299,300	순증	299,300	0	0
예 비 비 및 기 타			36,041	0.2	68,642	0.6	△32,601	△47.4	△32,601	0	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4933 ('24. 5.24)

〈표 6-4〉 일반재원 사업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합 계 (1 6 6 건)				822,709
1	총 무 과	교육행정기록물관리	기 록 물 관 리	50
2		기 관 기 본 운 영 비	본 청 기 관 운 영 비	153
3	안전총괄담당관	학 생 안 전 관 리	안 전 인 프 라 구 축	1,769
4	예 산 담 당 관	교 직 원 복 지 지 원	교 원 연 구 비	151
5		행 정 개 선 활 동 지 원	교육지원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	△63
6		행 정 개 선 활 동 지 원	평생교육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	△15
7		예 산 관 리	교 특 예 산 편 성	2,038
8		예 산 관 리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96
9		기 관 기 본 운 영 비	교 육 지 원 기 관 기 본 운 영 비	65
10		기 관 기 본 운 영 비	본 청 부 서 운 영 비	35
11		기 관 기 본 운 영 비	평 생 교 육 기 관 기 본 운 영 비	39
12		제 지 출 금 등	반 환 금	16,041
13		내 부 유 보 금	내 부 유 보 금	△48,642
14		교 원 인 건 비	명 예 퇴 직 수 당	5,000
15		교 원 인 건 비	보 수	13,923
16		교육전문직원인건비	명 예 퇴 직 수 당	100
17		계약제교원인건비	기 타 직 법 정 부 담 금	△524
18		계약제교원인건비	맞 춤 형 복 지 비	1,094
19		계약제교원인건비	보 수	△9,410
2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지 방 공 무 원 대 체 인 건 비	△751
21	행정관리담당관	법 무 관 리	위 원 회 운 영	20
22		조 직 및 성 과 관 리	조 직 및 정 원 관 리	65
23	참여협력담당관	교 육 비 지 원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운영	△2
24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학 부 모 관 련 사 업	100
25	노사협력담당관	근 로 자 인 사 관 리	교 육 공 무 직 노 무 관 리	△35
26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장애인고용의무제관련운영	△3,229
27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맞 춤 형 복 지 비	△75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28	대외협력담당관	의 회 협 력	국 회 협 력	4
29		의 회 협 력	시 의 회 협 력	9
30		교 육 협 력 관 리	교 육 유 관 기 관 협 력	11
3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영 재 교 육 운 영	영 재 교 육 내 실 화 지 원	31
32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원 격 교 육 지 원	208,650
33		교 과 서 지 원	교 과 용 도 서 지 원	4,986
34		정 보 보 안 관 리	정 보 화 기 획	49
35	유 아 교 육 과	유 아 교 육 운 영	유 보 통 합 운 영 지 원	11
36		유 아 교 육 운 영	유아놀이중심교육문화조성	256
37		사 립 유 치 원 지 원	사립유치원교원인건비지원	3,257
38		누 리 과 정 지 원	유 아 학 비 부 대 경 비	241
39	초 등 교 육 과	교 원 인 사 관 리	교 육 활 동 보 호 지 원	931
40		교 육 자 료 개 발 보 급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초)	46
41		현 장 중 심 장 학 지 원	수업혁신기반조성및수업나눔활성화	40
42		방 과 후 학 교 운 영	늘 봄 학 교 운 영 지 원	97,074
43		방 과 후 학 교 운 영	방 과 후 학 교 사 업 지 원	273
44		돌 봄 교 실 운 영	돌 봄 서 비 스 연 계 강 화	6
45		돌 봄 교 실 운 영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지 원	522
46	중 등 교 육 과	교 원 인 사 관 리	인 사 관 리	106
47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고 교 학 점 제 도 입 운 영 지 원	1,072
48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고 교 학 점 제 인 프 라 구 축 지 원	550
49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학교간공동교육과정운영활성화	750
50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학교내교육과정다양화내실화지원	26
51		학 력 평 가 관 리	수 능 모 의 평 가 지 원	4,293
52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고 입 선 발	15
53		대 학 수 학 능 력 시 험	대 입 전 형	△6
54		운 영 비 재 정 결 함 지 원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460
55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E B S 수 능 강 의 운 영 지 원	1,50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56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영 어 원 어 민 인 건 비 및 제 경 비	1,234
57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영 어 회 화 전 문 강 사 배 치	165
58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초 등 학 생 영 어 학 습 서 비 스 운 영	149
59		학 력 향 상 지 원	교 육 회 복 지 원	1,440
60		학 력 향 상 지 원	기 초 학 력 향 상 지 원	2,000
61		학 력 향 상 지 원	컴 퓨 터 기 반 학 업 성 취 도 평 가 지 원	436
62		학 력 평 가 관 리	학 업 성 적 관 리	89
63	평 생 교 육 과	평 생 교 육 시 설 및 운 영	평 생 교 육 시 설 지 원	△948
64		평 생 학 습 운 영	문 해 교 육 프 로 그 램 운 영	△81
65		평 생 학 습 운 영	장 애 성 인 평 생 교 육	△33
66		검 정 고 시 운 영	검 정 고 시 운 영	△13
67		도 서 관 운 영	도 서 관 다 문 화 서 비 스 지 원	25
68		도 서 관 운 영	독 서 문 화 및 교 육 지 원 사 업	120
69		도 서 관 운 영	서 울 교 육 박 물 관 운 영	60
70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공 공 도 서 관 환 경 개 선	△39
71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학 교 폭 력 예 방 및 교 육	학 교 폭 력 사 안 처 리 지 원	52
72		학 교 폭 력 예 방 및 교 육	학 교 폭 력 사 태 조 사 및 종 합 정 보 서 비 스 제 공	6
73		학 교 폭 력 예 방 및 교 육	학 교 폭 력 예 방 대 책	264
74		학 교 폭 력 예 방 및 교 육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응 체 계 운 영 지 원	44
75		학 교 폭 력 예 방 및 교 육	학 교 폭 력 예 방 프 로 그 램 운 영	352
76		학 생 상 담 활 동	단 위 학 교 상 담 지 원	330
77		학 생 상 담 활 동	학 생 상 담 내 실 화 지 원	56
78		학 생 상 담 활 동	학 생 상 담 센 터 운 영	200
79		대 안 교 육 운 영	대 안 교 육 기 관 지 원	1,112
80		대 안 교 육 운 영	대 안 교 육 위 탁 기 관 운 영	8
81		대 안 교 육 운 영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10
82		대 안 교 육 운 영	탈 북 학 생 지 원	146
83	진로 직업 교육 과	직 업 교 육 운 영	직 업 계 고 실 험 실 습 생 및 교 사 건 강 관 리	1,557
84		직 업 교 육 운 영	직 업 계 고 학 점 제 운 영 지 원	39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85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운영	직업교육고도화지원	298
86		직업교육운영	특성화고지원	10
87		취업역량강화	고졸취업지원확대	2,097
88		취업역량강화	취업지원센터운영	360
89		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매력도제고	696
90		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계고재구조화지원	1,807
91		직업교육환경개선	직업교육선도모델운영	3,628
92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915
93		각종체육활동	선진운동부육성	940
94		학교보건관리	학교보건지원강사운영	151
95		학교환경위생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운영	38
96		학교급식운영	무상급식	△5,622
97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기획운영	5,000
98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운영	방과후활동지원	2,540
99		특수교육운영	장애유형별맞춤형교육지원강화	168
100		특수교육운영	장애학생인권보호및교육권보장	77
101		특수교육운영	통합교육지원	20
102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350
103	학교지원과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2,984
104		학교신증설	학교신설	9,915
105		학생배치계획관리	학교신설수요적정관리	179
106		학생배치계획관리	학급설치지원	△1,225
107		적정규모학교육성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금	590
108		사학기관지도지원	학교법인운영지도	6
109		기관시설유지관리	직속기관신증설	600
110	교육재정과	재무회계관리	세입관리	31
111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재산관리일반운영비	4,398
112		공유재산및물품관리	학교시설개방우수학교운영비지원	1,385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113	교육시설안전과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급 식 시 설 개 선	6,951
114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급 식 실 및 학 생 식 당 신 증 축	5,881
115		학 교 시 설 확 충	강 당 겸 체 육 관	△3,120
116		학 교 시 설 확 충	기 타 증 축	622
117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기 타 사 업	23,510
118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냉 난 방 개 선	15,559
119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도 장 공 사	△394
120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바 닥 개 선	△1,597
121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방 수 공 사	8,118
122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소 방 시 설 개 선	5,973
123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안 전 관 리 (내 진 보 강)	6,191
124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안 전 관 리 (드 라이 비 트 해 소)	41,690
125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안 전 관 리 (샌 드 위 치 판넬 제 거)	8,636
126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안 전 관 리 (석 면 제 거)	33,718
127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안 전 관 리 (정 밀 점 검)	5,881
128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외 벽 개 선	4,125
129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외 부 환 경 개 선	2,446
130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장 애 인 편 의 시 설	3,317
131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전 기 시 설 개 선	13,152
132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창 호 개 선	8,288
133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화 장 실 개 선	143
134		시 설 사 업 운 영	건 축 공 간 정 책	35
135		시 설 사 업 운 영	건 축 시 설 관 리 일 반	6
136		시 설 사 업 운 영	교육환경개선사업시민참여현장검증단운영	△4
137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직 속 기 관 환 경 개 선	△252
138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청 사 환 경 개 선	417
139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평 생 교 육 기 관 환 경 개 선	1,388
140		기 금 전 출 금	교 육 시 설 환 경 개 선 기 금	299,300
141	미래학교추진단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17,274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부 서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증 감 액
142	미래학교추진단	학교시설환경개선	노 후 교 사 개 축	732
143		시 설 사 업 운 영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운 영	388
144		시 설 사 업 운 영	학 교 복 합 시 설 활 성 화	128
145	청사이전추진단	시 설 사 업 운 영	기 획 시 설 사 업 추 진 및 지 원	12
146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운영지원	교 육 연 구 개 발 지 원	20
147		ICT활용교육지원	원격수업지원플랫폼구축	3,200
148		정 보 보 안 관 리	정 보 시 스 템 운 영	△23
149	융합과학교육원	교육과정운영지원	과 학 탐 구 활 동 지 원	60
150		교육과정운영지원	남 부 체 험 학 습 장 운 영	15
151		교육과정운영지원	남 산 체 험 프 로 그 램 운 영	4
152		교육과정운영지원	남 산 체 험 학 습 장 운 영	9
153		교육과정운영지원	본 원 체 험 프 로 그 램 운 영	20
154		교육과정운영지원	본 원 체 험 학 습 장 운 영	10
155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교 육 연 수 운 영 여 건 개 선	16
156		교육과정운영지원	영 어 체 험 교 육 지 원	22
157	학 생 교 육 원	학 생 단 체 활 동	각 종 체 험 활 동 운 영	149
158		학 생 단 체 활 동	각 종 캠프 운 영	38
159		학 생 단 체 활 동	수 련 교 육 운 영 지 원	1
160	보건안전진흥원	학 교 보 건 관 리	보 건 실 현 대 화 사 업	280
161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	2,496
162		학 교 급 식 운 영	급 식 종 사 자 건 강 관 리	△30
163		학교급식환경개선	노 후 조 리 기 구 교 체 및 확 충	△33
164		학교급식환경개선	신 규 학 교 조 리 기 구 구 입	1,070
165	학 생 체 육 관	교육과정운영지원	체 육 연 수 지 원	115
166	교육시설관리본부	시 설 사 업 운 영	학 교 시 설 관 리 운 영	△1,400

〈표 6-5〉 목적지정재원중 우선확정 내역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우 선 확 정 일
국 보 조 금	도 서 관 운 영	도 서 관 다 문 화 서 비 스 지 원	49	2.27
	교육과정운영지원	발 명 교 실 운 영	170	4. 5
	학교시설환경개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3,355	4.18
	소 계 (3 건)		3,574	
특 교 부 금 (국가시책)	ICT활용교육지원	A I 정 보 교 육 중 심 학 교 운 영	1,854	2.20
		S W 교 육 현 장 안 착 및 활 성 화	5,626	1.12
		교 원 콘 텐 츠 플 랫 폼 운 영	52	2.29
		디 지 털 교 과 서 개 발	1,236	2.28
		교 육 용 콘 텐 츠 개 발 보 급	43	4.23
		A I 디 지 털 교 과 서 활 용 지 원	139	4.25
		디 지 털 기 반 구 축	11,464	1.12
		디 지 털 역 량 제 고	81	2.20
		디 지 털 미 디 어 문 해 교 육	49	2.13
		A I 융 합 교 육 전 문 과 정	1,413	2.16
	각 종 체 육 활 동	체 육 활 동 활 성 화	9,630	3.11
	교 실 수 업 개 선	교 원 역 량 성 장 지 원	127	3.11
	교 원 연 수 운 영	현장적합성높은교육실습운영 기반조성	470	2.19
		국가교육정책분야원격연수콘텐츠 개발, 교원연수질관리	112	2.29
		교원전문성신장을위한평가체제지원	30	4. 5
	교 원 인 사 관 리	교 육 활 동 보 호 센 터 운 영	1,150	2.26
		장 애 인 교 원 교 육 전 념 여 건 지 원	12	3.25
	교육과정운영지원	E B S e 영 어 교 육 방 송 지 원	388	2.29
		E B S m 구 축 운 영	388	3.11
		E B S 교 육 방 송 지 원	1,949	2.29
	교육과정운영지원	E B S 수 능 강 의 운 영 지 원	1,635	2.29
		S T E A M 교 육 확 산	272	2.13
		과 학 고 내 실 화 지 원	185	2.19
		과 학 교 육 지 원 체 계 구 축	190	2.13
		자 율 적 교 육 과 정 운 영 역 량 강 화	10	4. 1
		기 후 변 화 환 경 교 육	78	4. 1
		동 북 아 역 사 교 류 활 성 화 지 원	38	3. 4
		수 학 교 육 기 반 마 련 및 내 실 화	185	2.13
		예 술 교 육 활 성 화	115	2.19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우 선 확 정 일
특 교 부 금 (국가시책)	교육과정운영지원	초 등 학 생 문 해 력 교 육 지 원	30	2.13
		인공지능기반맞춤형영어학습지원	357	5. 8
		국가교육과정실행 및 이해제고지원	394	2.27
	교육복지우선지원	학 생 맞 춤 통 합 지 원 체 계 구 축	2,903	3. 5
	교육자료개발보급	인 공 지 능 활 용 초 등 수 학 교 수 학 습 자 료 개 발	91	2.13
	교 육 정 책 홍 보	함 께 학 교 플 랫 폼 활 성 화	233	4.13
	교육행정기록물관리	N E I S 교 육 통 계 시 스템 조 사	61	2.13
		데이터기반과학행정지원체계구축	178	2.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 영	교 육 행 정 정 보 시 스템 구 축 및 운 영	436	2.14
		유 아 지 능 형 나 이 스 운 영	761	3.2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글 로 벌 교 육 지 원	906	2.14
	기관및학교평가관리	시 도 교 육 청 평 가	27	2.13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 자 녀 교 육 지 원	이 주 배 경 학 생 인 재 양 성 지 원 사 업	2,540	2.13
	대 안 교 육 운 영	학업중단예방및대안교육지원사업	524	2.23
	대학수학능력시험	진 학 지 원	9,324	2.27
	독서논술교육운영	디지털기반융합형독서교육강화	110	3.11
	돌 봄 교 실 운 영	늘봄학교(돌봄서비스연계강화)	233	3.15
	돌 봄 교 실 운 영	늘봄학교(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3,668	3.15
	문화예술교육활동	예 술 교 육 활 성 화	1,269	3.11
	방 과 후 학 교 운 영	중 등 방 과 후 학 교 활 성 화 지 원	570	3.13
		늘봄학교(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	1,240	3.15
		늘봄학교(늘봄학교프로그램다양화)	1,130	3.15
		늘봄학교(방과후학교사업지원)	791	3.15
		늘봄학교(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	172	3.15
	방송통신중고운영	방송통신중고지원(소외계층 교육지원)	164	2.26
	성폭력예방교육등	성 인 권 증 진 및 성 평 등 정 책	19	2.14
		스 쿨 미 투 예 방 및 학 교 회 복 지 원	22	2.14
		학교성희롱성폭력근절기반구축 및 양 성 평 등 문 화 조 성	81	2.14
	영 재 교 육 운 영	S W · A I 과 학 인 재 육 성 기 반 마 련 및 영 재 교 육 운 영 내 실 화	216	2.21
		영 재 교 육 운 영 내 실 화	100	4. 9
	예 산 관 리	지 방 교 육 재 정 분 석 연 구 지 원	118	2.22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우 선 확 정 일
특 교 부 금 (국가시책)	유 아 교 육 운 영	유치원보호자교육온라인콘텐츠개발	44	2.27
		유 보 통 합 운 영 지 원	26	2.27
		유 아 교 육 교 육 력 제 고	129	2.27
		유 아 놀 이 중 심 교 육 문 화 조 성	793	2.27
	유 아 교 육 운 영	유 보 통 합 포 털 구 축	204	4. 9
		유 치 원 맞 춤 형 방 과 후 과 정	193	4.11
		유 초 연 계 이 음 학 기	18	4.18
	정 보 보 안 관 리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구축운영	1,874	2.14
		교 육 기 관 폰 트 및 저 작 권 지 원	12	3.11
	조 직 및 성 과 관 리	지방 교육 행 정 기 관 조 직 분 석 진 단	18	2. 5
	직 업 교 육 운 영	직업계고실험실습생 및 교사건강관리	173	3.18
		직 업 교 육 고 도 화 지 원	574	3.18
	직업교육환경개선	직 업 계 고 매 력 도 제 고	464	3.18
	직업교육환경개선	직 업 계 고 재 구 조 화 지 원	600	3.18
		직 업 교 육 선 도 모 델 운 영	974	3.18
		직 업 교 육 혁 신 지 구 운 영	1,018	5. 9
	진로진학교육운영	진 로 교 육 기 반 구 축	330	2.20
		초 중 등 창 업 체 험 교 육 활 성 화	151	2.20
	취 업 역 량 강 화	고 졸 취 업 지 원 확 대	233	3.18
		취 업 지 원 센 터 운 영	40	3.18
	특색교육과정운영	학교 행정업무경감 및 효율화	310	2.20
		최 소 성 취 수 준 보 장 지 도 지 원	328	2.28
		고 교 학 점 제 도 입 운 영 지 원	214	2.28
		원격수업지원교과서PDF저작권보상금	4	3.11
		I B 프 로 그 램 도 입 확 산 지 원	188	3.11
		교 과 서 민 원 바 로 처 리 센 터 운 영	185	3.18
	특색교육과정운영	고 교 학 점 제 단 계 적 이 행	368	3.19
		학습자중심현장맞춤형교과서개발	6	4.19
		진 로 학 업 설 계 컨 설 팅 운 영	89	5. 8
	특 수 교 육 운 영	장애유형별맞춤형교육지원강화	1,487	2.22
		특 수 교 육 대 상 자 돌 봄 및 방 과 후 프 로 그 램	90	4. 8
		장 애 학 생 교 육 혁 신 기 반 조 성	176	2.22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우 선 확 정 일
특 교 부 금 (국 가 시 책)	특 수 교 육 운 영	장애학생인권보호 및 교육권보장	111	2.22
		장애학생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지원	195	2.22
	평생교육시설및운영	편 · 불 법 학 원 지 도 단 속	847	2.13
	학 교 급 식 운 영	맞춤형영양식생활교육지원	85	3.22
	학 교 보 건 관 리	학 생 건 강 관 리 내 실 화	187	2.28
		학 생 건 강 증 진 센 터 지 원	726	2.23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 교 폭 력 예 방 교 육 지 원	98	2.14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체계운영	44	2.14
		학 교 폭 력 사 안 처 리 지 원	1,376	2.14
		학 교 폭 력 예 방 프 로 그 램 운 영	228	2.13
		학 교 안 전 망 구 축	1,268	2.16
	학교환경위생관리	학 생 건 강 관 리 내 실 화	15	2.28
	학 력 평 가 관 리	수 능 모 의 평 가 지 원	477	2.27
		미래형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체제 구축운영	553	2.23
		미래형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체제 구축운영(초)	56	3.11
		컴퓨터기반형성평가도구개발	19	3.27
		2028대입개편안적용을위한나이스 기능개선	36	3.27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	2,771	2.23
	학 력 향 상 지 원	기초학력진단보장시스템운영 및 기초학력지원강화	899	3.11
		교 육 회 복 지 원	6,630	3.14
		기초학력보장선도시범학교운영	880	3.14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지원	4,322	3.14
		책 임 교 육 학 년 지 원	6,991	3.14
		학 부 모 및 주 민 참 여 확 대	300	5. 1
	학생배치계획관리	지 방 교 육 행 정 기 관 설 립 운 영 지 원	118	2.27
	학 생 상 담 활 동	학 생 상 담 내 실 화 지 원	137	2.22
		학교폭력피가해학생교육치유지원	395	2.22
		W e e 센 터 운 영 지 원	36	5. 9
	학생생활지도지원	환 경 지 속 가 능 발 전 교 육	16	2.14
		인 성 시 민 역 량 함 양	167	4.18
	학 생 안 전 관 리	학 생 안 전 관 리 강 화	468	4. 2
	현장중심장학지원	수 업 혁 신 기 반 조 성	227	2.28
		실천적인성교육프로그램발굴	111	3.04

(단위 : 백만원)

재 원	세 부 사 업	사 업 내 역	우 선 확 정 액	우 선 확 정 일
특 별 교 부 금 (국가시책)	현장중심장학지원	수 석 교 사 역 할 강 화 를 통 한 수 업 교 육 전 념 여 건 조 성	6	3.19
		인성교육교육용콘텐츠개발보급	15	3.26
		디지털기반맞춤형인성교육활성화	12	4.30
	소 계 (1 2 8 건)		109,724	
특 별 교 부 금 (지역현안)	시 설 사 업 운 영	에 코 스 쿨 조 성	4,000	4.26
	학교급식환경개선	급 식 시 설 개 선	791	1.22
		급 식 실 및 학 생 식 당 신 증 축	928	1.22
	학 교 시 설 확 충	기 타 증 축	489	1.22
	학 생 안 전 관 리	학 생 안 전 인 프 라 강 화	633	1.18
		통 학 로 교 통 환 경 개 선	1,898	4.18
	학교시설환경개선	기 타 사 업 (1 차 지 역 현 안)	8,193	1.22
		기 타 사 업 (2 차 지 역 현 안)	9,497	4.18
		도 장 공 사 (1 차 지 역 현 안)	191	1.19
		바 닥 개 선 (1 차 지 역 현 안)	738	1.19
		바 닥 개 선 (2 차 지 역 현 안)	606	4.18
		방 수 공 사 (1 차 지 역 현 안)	1,792	1.22
		외 벽 개 선 (1 차 지 역 현 안)	876	1.24
		외부환경개선(1차 지역현안)	389	1.19
		장애인편의시설(1차 지역현안)	224	1.19
		장애인편의시설(2차 지역현안)	161	4.18
		창 호 개 선 (1 차 지 역 현 안)	162	1.19
		창 호 개 선 (2 차 지 역 현 안)	125	4.18
	소 계 (1 8 건)		31,693	
특 별 교 부 금 (디지털 교육혁신)	ICT활용교육지원	A I D T 교 원 연 수 질 관 리 체 계 구 축	7,009	4.30
		A I D T 적 용 교 원 연 수 지 원	18,342	4.30
		찾 아 가 는 학 교 연 수 운 영	8,262	5. 6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교 원 연 수 지 원	733	5. 8
		디 지 털 새 싹 운 영	7,760	5. 6
	교 원 연 수 운 영	디 지 털 기 반 교 육 혁 신	3,900	5. 7
	교육과정운영지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교원연수운영	1,300	5. 7
	방 과 후 학 교 운 영	디지털혁신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	31,280	4.30
	정 보 보 안 관 리	디지털교육혁신특별한재정수요지원	8,783	5. 7
	소 계 (9 건)		87,369	

(단위 : 백만원)

재원	세부사업	사업내역	우선확정액	우선확정일
광역 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친환경급식비(1~2월)	5,221	1.12
		친환경유치원급식비(1~2월)	2,423	1.12
		친환경급식비인건비인상분(2월)	13	2.13
		친환경유치원급식비인건비인상분(2월)	26	2.15
		친환경유치원급식비(3~8월)	11,256	4.18
		친환경급식비(3~8월)	111,819	4.11
	도서관운영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789	4.18
	학교시설환경개선	기타사업(1차특별교육경비보조)	907	4. 1
		바닥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50	4. 1
		소방시설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70	4. 3
		외벽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28	4.15
		외부환경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220	4. 1
		창호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175	4. 3
		전기시설개선(1차특별교육경비보조)	140	4. 1
소계(14건)		133,137		
기초 자치단체 전입금	학교급식운영	친환경급식비(1~2월)	3,521	1.12
		친환경유치원급식비(1~2월)	1,615	1.12
		친환경급식비인건비인상분(2월)	8	2.13
		친환경유치원급식비인건비인상분(2월)	17	2.15
		친환경급식비(3~8월)	75,516	4.11
		친환경유치원급식비(3~8월)	7,505	4.18
	민간투자사업상환	언주초지하주차장복합화임대료	695	3.18
	평생학습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	8	5. 7
	소계(8건)		88,885	
전입금	학력평가관리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	4,740	1.29
	유아교육운영	유초연계이음학기운영	93	4.30
	교원연수운영	초등교장자격연수	20	5. 1
		교감자격연수	4	5. 1
	소계(4건)		4,857	
기타지원금	평생학습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노원평생학습관)	5	3.27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고덕평생학습관)	5	5. 8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운영(마포평생학습관)	5	5. 7
	소계(3건)		15	
합계(187건)		459,254		

〈표 6-6〉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금 액	반 납 기 관
참 여 협 력 담 당 관	입학준비금(광역)	652	서 울 시
	입학준비금(기초)	500	자 치 구
	교육급여지원(22년)	11	자 치 구
	학교학습공간시설개선지원(22년)	470	서 울 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발명교실운영	0.117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유 아 교 육 과	유아보육료	5,036	교 육 부
	유아학비	489	교 육 부
중 등 교 육 과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지원	141	서 울 시
	전국연합학력평가실시(시도분담금)	13	16 개 시 도 교 육 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174	자 치 구
평 생 교 육 과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	0.176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도서관창작공간조성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웹툰창작체험관조성및운영	0.85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대안교육기관지원	741	서 울 시
진 로 직 업 교 육 과	직업계고창의인재양성프로그램	0.123	서 울 시
체육건강예술포육과	초등스포츠강사연수비	4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	3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학교흡연예방사업	101	보 건 복 지 부
	학교급식(광역)	4,313	서 울 시
	학교급식(기초)	2,899	자 치 구
교 육 시 설 안 전 과	특별교육경비(23년)	289	서 울 시
	특별교육경비(22년)	50	서 울 시
	꿈을담은교실만들기(22년)	144	서 울 시
합 계(총 23건)		16,041	